

발 간 등 록 번 호

76-6480000-000202-10

feel
GyeongNam

당당한 경남시대 

2014 계약심사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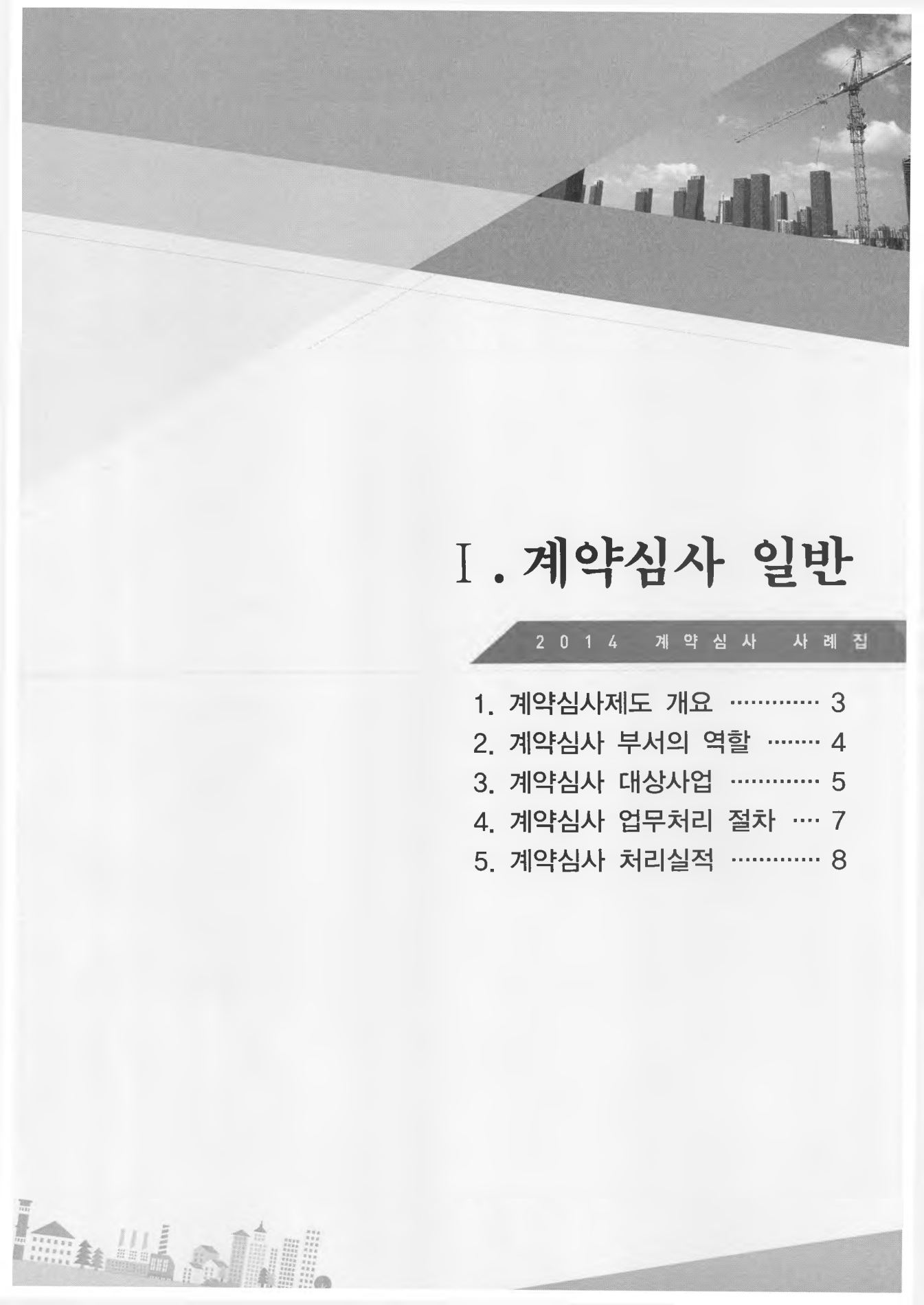
경 상 남 도
(회 계 과)



목 차

CONTENTS

I. 계약심사 일반	1
1. 계약심사제도 개요	3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4
3. 계약심사 대상사업	5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7
5. 계약심사 처리실적	8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1
1. 토목공사	13
2. 건축공사	43
3. 전기공사	55
4. 기계·통신·소방공사	61
5. 건설기술용역	67
6. 일반용역	79
7. 물품구매·제조 및 인쇄	87
8. 시군 자체 계약심사	99
III. 부 록	135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137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155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195



I . 계약심사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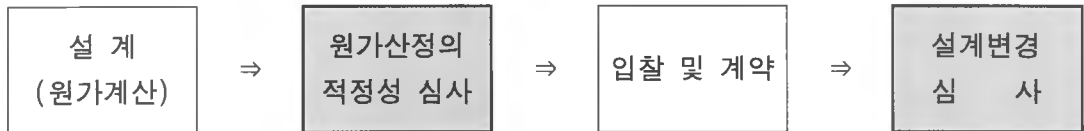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 1. 계약심사제도 개요 3
-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4
- 3. 계약심사 대상사업 5
-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7
- 5. 계약심사 처리실적 8

1. 계약심사제도 개요

_개념 및 목적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예산 절감
-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도모



_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_추진경과

- 2008. 3 : 시도별 "계약심사과" 설치 기본계획 마련(행안부)
- 2008. 5 :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 통보(행안부)
- 2008. 7 : "계약심사과" 직제신설
- 2008. 9 :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정
- 2011. 1 : "계약기술심사과" 부서명칭 변경
- 2012. 1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감사관실 일상감사담당"신설
 - 과폐지 2담당 신설(계약심사담당 : 시군, 일상감사담당 : 도본청)

2. 계약심사 부서의 역할

- 원가산정(설계)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의 불일치 사항, 물량 적정산출 여부 심사
-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 원가계산 방식 · 제경비 요율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심사
- 자재단가(조달 · 견적가 · 가격정보지 등), 노임의 적정성 심사
- 실적공사비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기타 각종 대가기준 반영여부 및 중복부분 중점심사

주요 심사내용

원가산정의
적정성

-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가격 적정성
-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설계 · 공법의
적정성

- ▶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 신기술 · 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설계변경
심사

-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성 심사

3.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대상 기관 및 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도〉 • 도 본청 및 사업소 • 지방공기업 •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시·군〉 • 국도비 재배정사업 • 국도비 보조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3억원 이상) • 용역 - 건설기술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학술 및 일반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구매·제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심사제외 대상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예: 상품권, 예술품 등)
-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 계약부서(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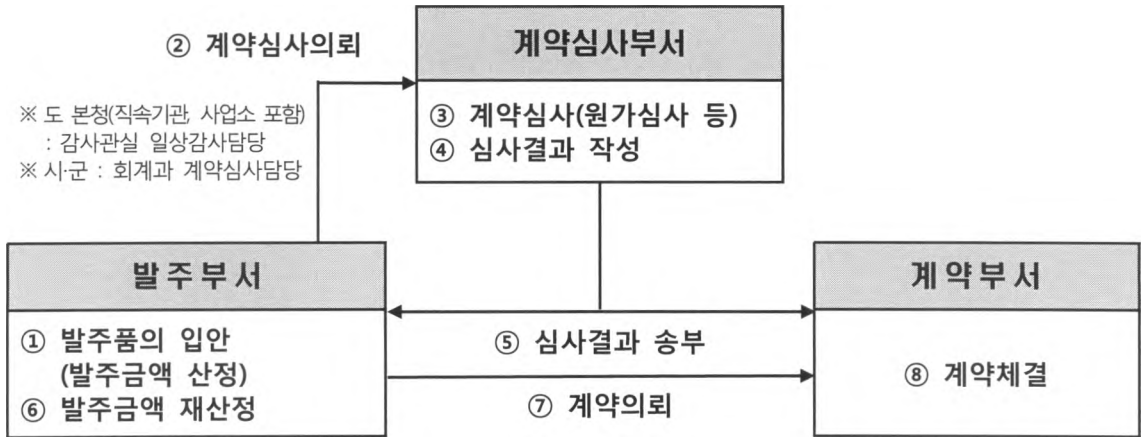
· 경상남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 내역(2012.10.15~변경시까지)

연번	분야	사 업 명	제외사유
1	물품	정부단가고시 물품(조정)	정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후 고시로 심사 실익이 없음
2	물품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 구매	매 일마다 가격이 달라 거래실례가격 적용곤란(날씨 등 영향)
3	물품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 부품	기존 장비와의 호환문제, 헬기제조사에서 독점 공급하여 대체품이 없음
4	물품	동·식물(화환 등 포함) 구매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동·식물은 거래실례가격 적용 곤란)
5	용역	행사 용역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 (출연자, 홍보매체에 따라 가격 상이)
6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공사	도로포장, 잔디구장 조성 등 관급자재의 비중이 높아 심사 실익이 없음

※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4. 계약심사 업무처리 절차

_ 업무처리 흐름



_ 업무처리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실적관리	□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5. 계약심사 처리 실적

총괄

연도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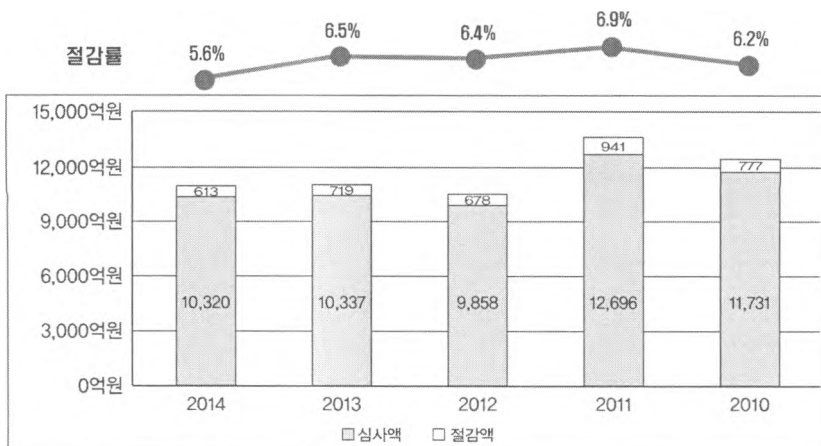
연도별	건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4,880	5,867,209	5,494,178	373,031	6.3%
2014	941	1,093,305	1,031,988	61,317	5.6%
2013	931	1,105,657	1,033,703	71,954	6.5%
2012	1,061	1,053,674	985,852	67,822	6.4%
2011	1,068	1,363,703	1,269,521	94,182	6.9%
2010	879	1,250,870	1,173,114	77,756	6.2%

사업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사			용역			물품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액	절감률
계	2,612	340,087	6.6%	934	28,545	4.7%	1,334	4,399	4.4%
2014	495	56,625	5.9%	165	3,808	4.2%	281	884	2.4%
2013	521	66,238	7.0%	187	4,783	3.6%	223	933	3.5%
2012	504	61,293	6.8%	204	5,476	4.6%	353	1,053	4.0%
2011	571	87,795	7.2%	197	5,523	4.7%	300	864	4.8%
2010	521	68,136	6.2%	181	8,955	6.5%	177	665	7.2%

연도별 변동추이



2014년 도 계약심사 실적

■ 사업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941	1,093,305	1,031,988	61,317	5.6%
공 사	495	965,380	908,755	56,625	5.9%
용 역	165	91,349	87,541	3,808	4.2%
물 품	281	36,576	35,692	884	2.4%

■ 발주기관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계	941	1,093,305	1,031,988	61,317	5.6%
본 청	107	146,120	138,247	7,873	5.4%
사 업 소	89	39,405	38,568	837	2.1%
출연기관	24	11,684	11,493	191	1.6%
시 · 군	721	896,096	843,680	52,416	5.8%

절감액566억원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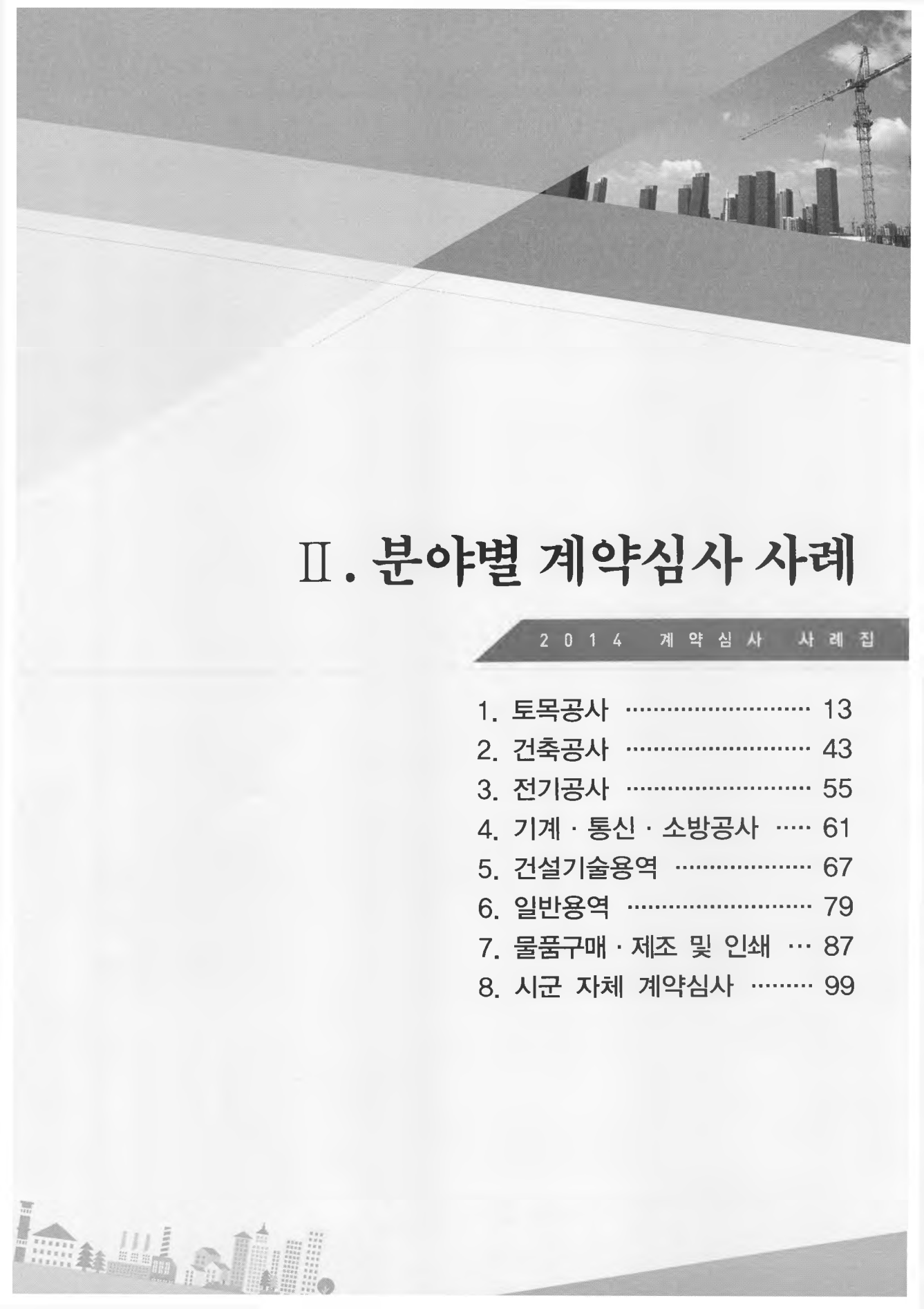


절감액38억원
(4.2%)



절감액8억원
(2.4%)





Ⅱ.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1. 토목공사	13
2. 건축공사	43
3. 전기공사	55
4. 기계 · 통신 · 소방공사	61
5. 건설기술용역	67
6. 일반용역	79
7. 물품구매 · 제조 및 인쇄 ...	87
8. 시군 자체 계약심사	99

1. 토목공사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
◆ ○○마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16
◆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7
◆ ○○다목적광장(주차장) 조성사업	18
◆ ○○위험도로 개선공사	19
◆ ○○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20
◆ ○○도로 확포장공사	21
◆ ○○도로 확포장공사	22
◆ ○○천 정비사업	23
◆ ○○아트파크 조성사업	25
◆ ○○하수도 증설사업	27
◆ ○○탐방로 조성사업	28
◆ ○○수목원 조성사업	29
◆ ○○용수로 정비사업	30
◆ ○○관광단지 정비사업	31
◆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32
◆ ○○도로 선형개선공사	33
◆ ○○하수관거 정비사업	34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
◆ ○○교량 재가설 공사	37
◆ ○○고향의 강 조성사업	40
◆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2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23.3m, B=6.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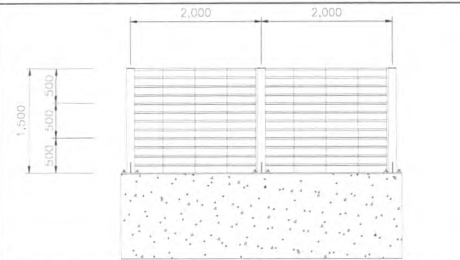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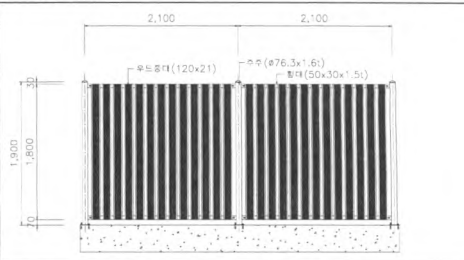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48,880	613,980	34,900	5.38%

■ 주요 심사내용

-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흡음식 방음벽을 계획하여 목적에 맞게 사생활 보호용 가림막으로 수량 및 공종 변경

구 분	요 청	심 사
규 격	흡음식 방음벽(H=1.5m)	우드 가림막(H=1.8m)
연 장	72.0m(36경간)	40.0m(20경간)
평면도		
정면도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을 감안한 공법 적용 여부

○○마을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마을공동공간리모델링 3개소, 자전거쉼터 및 원두막 10개소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89,622	2,848,152	141,470	4.73%

■ 주요 심사내용

- 식재품이 포함되어 있는 잔디블럭 설치 시 중복 계상된 잔디 식재품 삭제
- 점토 잔디블럭의 잔디 식재 수량이 잔디블럭 전체 면적으로 적용되어 블럭 부분 면적을 제외한 실 잔디 식재 면적으로 조정
- 점토잔디블럭 기초보강(그리드)은 구조점토상 불필요하므로 삭제
- 웬스설치 품을 표준품셈에 맞게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단가산출(일위대가)의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산출 여부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쉼터조성, 생태광장조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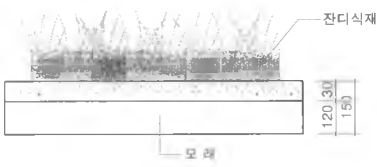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16,440	703,810	12,630	1.76%

■ 주요 심사내용

- 천연잔디 식재에 따른 모래부설을 생육에 충분한 두께 (15cm→13cm)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표 준 단면도		

- 골재 하역비 누락에 따른 추가 및 퇴직공제 부금비 누락에 따른 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잔디 식재공에서 생육여건을 감안한 모래부설 두께 적용 여부

○○ 다목적광장(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A=13,120m², 진출입로 개설 L=12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00,000	1,740,460	159,540	8.40%

■ 주요 심사내용

- 주차장내 포장재별 경계부분 단차로 인한 시공성이 불량하여 보조기층 및 모래층 단면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위 치	주차장내 도로 및 소형주차장		
단면도	T170, 잔디블럭 T230, 입도조정채석 T50, 모래	T170, 잔디블럭 T280, 입도조정채석	식생 잔디 블럭
	T200 투수시멘트콘크리트포장(축색) T200 보조기층(φ40mm이하, 혼합골재) T50 모래부설	T200 투수시멘트콘크리트포장(축색) T250 보조기층(φ40mm이하, 혼합골재)	투수 시멘트 포장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방안 강구

○○ 위험도로 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위험도로확.포장 L= 930m, B=8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19,000	1,471,000	48,000	3.16%

■ 주요 심사내용

- 암각기에서 보통암으로 적용된 암질을 노출암의 풍화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연암, 보통암 혼용 조정
- 암파쇄방호시설의 높이를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에 따라 조정
- H=4.5m, W=2.0m→ H=3.0m, W=2.0m)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표지병)에 맞게 수량조정
- 2m당 1EA 설치 → 6.5m당 1EA설치

■ 기타 착안사항 등

- 암각기 품의 암질 적용 시 현장의 암질 반영 검토
- 암파쇄방호시설 설치지침 따른 암파쇄 방호시설 높이 적용여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도로표지병 설치 간격 산정여부

○○ 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로 설치 631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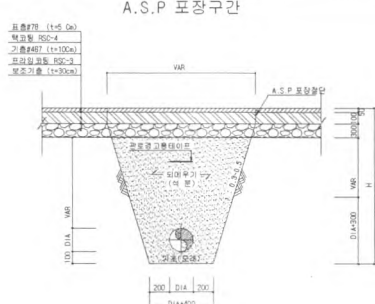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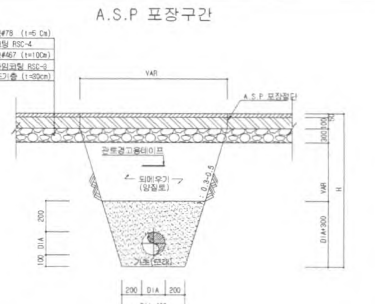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59,500	530,500	29,000	5.2%

■ 주요 심사내용

- 하수관 되메우기 재료를 모래에서 모래와 양질토사로 구분하여 반영

구 분	요 청	심 사
하수관거 토공	A.S.P 포장구간  - 사토량 : 1,168m³ - 모래구입 : 1,278m³	A.S.P 포장구간  - 사토량 : 408m³ - 모래구입 : 378m³

■ 기타 착안사항 등

- 하수관거 되메우기 재료를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함으로써 모래 구입비, 사토량 감소

○○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 · 포장 L=1.8km, B=8.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06,800	3,510,000	196,800	5.3%

■ 주요 심사내용

- 보조기층재 “순환골재 의무 사용량 제정고시(제2012-475, 국토교통부) 에 의거 보조기층 소요량의 30% 순환골재 사용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보조기층운반 (산근 98호표)	○보조기층운반 - 수량 : 8,914m ³ 11,941원/m ³	○보조기층운반 - 수량 : 6,240m ³ 11,609원/m ³	감 34,001,914원 감 332원/m ³
	○순환골재운반 - 수량 : - m ³ - 원/m ³	○순환골재운반 - 수량 : 2,674m ³ 6,338원/m ³	증 16,947,812원 증 6,338원/m ³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끄럼방지포장 제외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미끄럼 방지포장	○ 미끄럼방지포장 : 1,230m ² 31,000원/m ²	○ 미끄럼방지포장 삭제 31,000원/m ²	감 38,130,00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보조기층재 등 골재 소요 공사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검토
- 도로안전시설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검토

○○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1.9km, B=9.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86,000	5,738,400	347,600	5.7%

■ 주요 심사내용

-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지침에 따라 흙쌓기 높이 2m 이상구간에 동상방지층 생략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위 치	동상방지층 설치 - STA.0+000~STA.0+000 L=240m - STA.0+000~STA.0+000 L=60m	동상방지층 생략	
연 장	300m / 2개소	-m / -개소	

■ 기타 착안사항 등

- 동상방지층 설치 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기준 검토

○○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1.14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68,860	1,522,000	46,860	3.0%

■ 주요 심사내용

- 철근콘크리트 깨기 후 발생하는 철근의 고재처리비 계상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철근콘크리트깨기 (산근 5호표)	○철근 콘크리트 깨기 - 철근 고재처리 미적용	○철근 콘크리트 깨기 - 철근 고재처리 적용	감 3,306,532원
	28,754원/m ³	22,807원/m ³	감 5,947원/m ³

- 수리검토를 통해 전석 규격 최적화(0.5m³급 → 0.3m³급)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전석쌓기 (제3호표)	○전석쌓기 : 0.5m ³ 급	○전석쌓기 : 0.3m ³ 급	감 20,452,230원
	44,997원/m ²	38,535원/m ²	감 6,462원/m ²

- 물푸기 장비의 운반 및 설치를 장비가동시간으로 단가 산출한 것을 현장 작업상황에 맞게 단가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물푸기 (산근37호표) 장비운반 및 설치 (산근38호표)	○물푸기 (장비운반 및 설치 포함)	○물푸기 ○장비운반 및 설치(분리)	감 457,468원
	6,504원/시간	물푸기 : 3,304원/시간 장비운반 및 설치: 2,433원/회	감 3,200원/시간

■ 기타 착안사항 등

- 작업 부산물의 고재처리 가능 여부 검토
- 호안보호공 적용 시 유속, 소류력 등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법 적용
- 장비운반 및 설치 등 현장내 1회 적용 단가의 시간당 산출여부 검토

○○ 아트파크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진입도로 L=1.106km, 공원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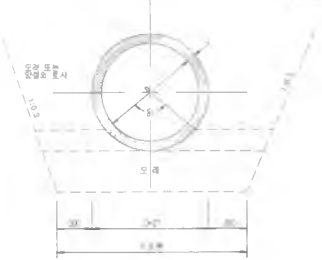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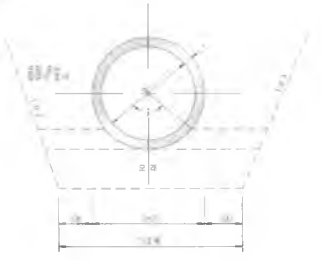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07,920	1,503,423	104,497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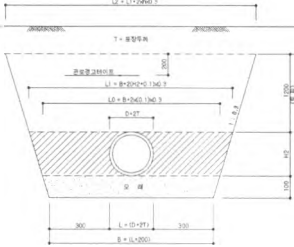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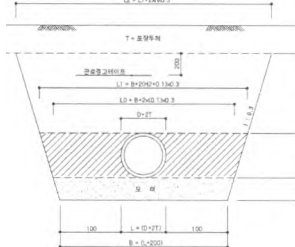
■ 주요 심사내용

- 오수관 관로 터파기 여유폭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횡단면도			
우수관 (D250)	여유폭 : 0.3m ○ 터파기 : 0.917m³ ○ 되메우기 : 0.843m³ 4,015원/m	여유폭 : 0.1m ○ 터파기 : 0.597m³ ○ 되메우기 : 0.523m³ 2,575원/m	감 61,920원 감 1,440원/m
오수관 (D150mm)	여유폭 : 0.3m ○ 터파기 : 0.587m³ ○ 되메우기 : 0.467m³ 2,462원/m	여유폭 : 0.1m ○ 터파기 : 0.343m³ ○ 되메우기 : 0.263m³ 1,423원/m	감 197,280원 감 1,039원/m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오수관 (D200mm)	여유폭 : 0.3m ○ 터파기 : 1.621m^3 ○ 되메우기 : 1.479m^3	여유폭 : 0.1m ○ 터파기 : 1.093m^3 ○ 되메우기 : 0.991m^3	감 2,291,796원
	7,081원/m	4,780원/m	감 2,301원/m

○ 상수관 관로 터파기 여유폭 및 토피고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상수관 (D25mm)	 여유폭:0.3m, 토피:1.2m ○ 터파기 : 1.374m^3 ○ 되메우기 : 1.307m^3	 여유폭:0.1m, 토피:0.6m ○ 터파기 : 0.331m^3 ○ 되메우기 : 0.304m^3	감 555,960원
	6,081원/m	1,448원/m	감 4,633원/m
상수관 (D40mm)	여유폭:0.3m, 토피:1.2m ○ 터파기 : 1.424m^3 ○ 되메우기 : 1.354m^3	여유폭:0.1m, 토피:0.6m ○ 터파기 : 0.356m^3 ○ 되메우기 : 0.326m^3	감 2,183,160원
	6,302원/m	1,556원/m	감 4,746원/m
상수관 (D50mm)	여유폭:0.3m, 토피:1.2m ○ 터파기 : 1.461m^3 ○ 되메우기 : 1.389m^3	여유폭:0.1m, 토피:0.6m ○ 터파기 : 0.375m^3 ○ 되메우기 : 0.343m^3	감 3,986,276원
	6,465원/m	1,639원/m	감 4,826원/m

■ 기타 착안사항 등

○ 상·하수관로 터파기 여유폭을 관련 지침에 맞게 적용

○○ 하수도 증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로설치 및 하수처리장 증설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782,000	5,393,424	388,576	6.7%

■ 주요 심사내용

- 간이흙막이설치 품을 굴착깊이에 따라 세분하여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조정금액
간이흙막이설치	H=2.5 → - m	H=2.5 → 1,142m	증) 100,652,454원
	-	88,137원/m	
	H=3.0 → 2,284m	H=3.0 → 1,142m	감) 119,965,958원
	105,049원/m	105,049원/m	
	H=3.5 → - m	H=3.5 → 688m	증) 83,829,360원
	-	121,845원/m	
	H=4.0 → 1,377m	H=4.0 → 689m	감) 95,384,320원
	138,640원/m	138,640원/m	
	H=4.5 → - m	H=4.5 → 300m	증) 46,688,700원
	-	155,629원/m	
	H=5.0 → 600m	H=5.0 → 300m	감) 51,801,000원
	172,670원/m	172,670원/m	
	H=5.5 → - m	H=5.5 → 56m	증) 10,629,920원
	-	189,820원/m	
	H=6.0 → 112m	H=6.0 → 56m	감) 11,590,264원
	206,969원/m	206,969원/m	
계			감) 36,941,108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굴착깊이에 따른 간이흙막이 설치 규격 적용여부

○○ 탐방로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탐방로 조성 L=14.1k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00,000	768,000	32,000	4%

■ 주요 심사내용

- 마사토 포장의 인력시공을 현장여건(노폭 : 3.0m)을 감안하여 기계공사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마사토포장 (제51호표)	○ 터파기 - 노무비: 5,049원	○ 터파기 -백호우+보조인부: 2,802원	감 11,478천원
	○ 잔토처리 - 노무비: 5,049원	○ 잔토처리 -백호우+보조인부: 2,310원	
	51,136원/㎡	42,570원/㎡	감 8,566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인력시공 계획 구간의 장비 진입 가능여부 검토

○○ 수목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목원 조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44,000	631,000	13,000	2%

■ 주요 심사내용

- 조경석 놓기를 현장에 맞게 조경 유용석 놓기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조경석 놓기	○조경석놓기 - 조경공 : 0.836인 - 굴삭기(0.7m³) : 0.684hr - 공구손료 : 노무비의3% 140,627/Ton (16,579,921원)	○조경유용석 놓기 - 조경공 : 0.084인 - 석공 : 0.251인 - 굴삭기(0.6m³) : 0.588hr 76,737/Ton (9,047,292원)	감 7,532,629원

※ 조경유용석 놓기 : 현장유용석을 활용하여 화단, 수로 경계등의 수직방향으로 사면을 조성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여건에 맞는 표준품셈 적용

○○ 용수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용수로 정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59,759	655,854	3,905	0.59%

■ 주요 심사내용

- 안전관리비 효율을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1.86%+5,349천원x1.2	○ 안전관리비 2.93%x1.2	감 1,703,453원
	11,742,442원	10,038,989원	감 1,703,453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 대상액 적정 여부 검토
 - 대상액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관광단지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광단지 조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66,286	913,303	52,983	5.48%

■ 주요 심사내용

- 난간설치 품을 앵커고정식 난간설치 품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난간설치 (제201호표)	○ 난간설치 - 잡철물설치	○ 앵커고정식 난간설치 - 건축목공 0.036 - 특별인부 0.054 - 보통인부 0.054	감 87,376원
	5,358,952원/ton (22,897원/경간)	14,954원/경간	감 7,943원/경간

■ 기타 착안사항 등

- 목재 난간 설치를 단가가 과다한 잡철물 제작 설치품 적용 여부 검토
 - 목재난간 : 앵커고정식 난간 설치의 철공을 건축목공으로 적용

○○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조성 L=5.45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90,500	1,633,000	57,500	3.4%

■ 주요 심사내용

- 구조물공 자전거분리경계석 레미콘타설 소형구조물 => 무근구조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구조물공 (자전거분리 경계석)	○ 레미콘타설 : 소형구조물	○ 레미콘타설 : 무근구조물	감 2,239천원
	55,301원/㎡	27,650원/㎡	감 27,651원/㎡

※ 소규모 구조물 : 소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인력비빔 3㎡내외, 기계 10㎡내외)이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기타 착안사항 등

- 레미콘 타설의 소형구조물 설치품 적용 적정 여부

○○ 도로 선형개선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선형개량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35,070	492,370	42,700	7.98%

■ 주요 심사내용

- 도로표지병 설치 개소를 현장여건 및 관련 기준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도로표지병 (관급자재)	○도로표지병 - 2,050 개소	○도로표지병 - 1,500 개소	감 12,870,000원
	1개소/2m마다	1개소/5~50m마다	감 550개소

■ 기타 착안사항 등

- 시선유도시설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른 설치 간격 준수 여부

곡선 반경	설치 간격	곡선 반경	설치 간격
50 이하	5.0 m	1,951 이상	50.0 m

○○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관거 정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262,140	6,801,090	461,050	6.3%

■ 주요 심사내용

- 강널말뚝 자재 규격이 구조검토 없이 반영되어 구조검토 후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강널말뚝	○ 400*150*13T	○ 400*100*10.5T	감36,498,259원
	731.136ton	584.909ton	감 146.227ton

■ 기타 착안사항 등

- 각종 부재의 단면 결정 시 구조검토 수행 여부 확인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위험지구 정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553,920	6,577,080	976,840	12.9%

■ 주요 심사내용

- 준설토 응집제를 가격이 저렴한 판급으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준설토 1차응집	○준설토 1차응집(사급)	○준설토 1차응집(판급)	감 104,498,543원
	4,139원/m ³	952원/m ³	감3,187 원/m ³
준설토 2차응집	○준설토 2차응집(사급)	○준설토 2차응집(판급)	감 76,103,269원
	3,695원/m ³	1,374원/m ³	감2,321 원/m ³

- 철근가공조립을 작업난이도 및 가공량 등을 고려하여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철근가공조립	○철근가공조립 : 복잡(현장가공)	○철근가공조립 : 보통(공장가공)	감 37,141,879원
	600,945원/ton	374,588원/ton	감 226,357원/ton

○ 교량 설치 목적과 경제성을 고려한 교량형식 변경 (PC-beam → H-beam)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교량형식	B=3.0, L=41.0m(PC)	B=3.0, L=42.0m(H-BEAM)	
기초형식	타설 기둥	PHC 파일기초	
공사비	316,388,812/식	58,679,372/식	
표준 단면도			
요 청			
심 사			

■ 기타 착안사항 등

- 주요자재의 관급 전환으로 공사비 절감
-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을 고려한 교량형식 선정

○○ 교량 재가설 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량 재가설 L=72m, B=2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890,840	6,738,540	1,152,300	14.6%

■ 주요 심사내용

- 최적단면을 위한 구조 재검토 결과 반영
 - 교대 강관말뚝 두께 변경(12t→9t) 및 말뚝본수 최적화, 단면 최적화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제 원	t=12mm, 68본	t=9mm, 64본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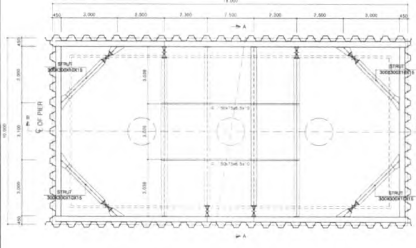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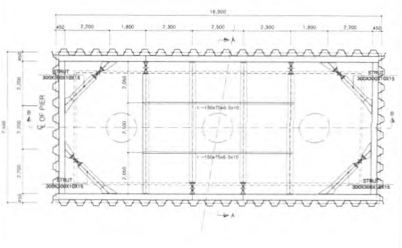
<수량 산정>

구 분	단 위	요 청		심 사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콘크리트	m³	2,436	167,507,047	2,175	150,848,123	감 16,658,924
콘크리트타설	m³	2,567	38,651,881	2,242	32,867,240	감 5,784,641
거푸집	m²	1,693	36,131,745	1,618	34,316,610	감 1,815,135
철근가공조립	ton	93.862	31,847,411	80.860	27,217,919	감 4,629,492
강관파일	m	514	81,502,243	483	57,847,910	감 23,654,333
S.D.A+T-4	m	394	142,649,225	72	21,672,038	감 120,977,187
시멘트	kg	192	17,365,028	18	1,672,070	감 15,962,958
두부보강	본	68	12,225,040	64	11,505,920	감 719,120

<공사비 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 감
도 급 공 사 비	360,372,573	1,87,099,707	감 173,272,866
관 급 자 재 대	167,507,047	150,848,123	감 16,658,924
계	527,879,620	337,947,830	감 189,931,790

○ 현장 토질여건을 고려한 가시설 설계 최적화(교대 및 교각부)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가시설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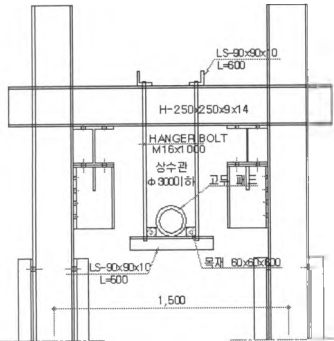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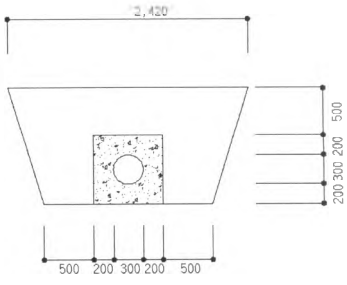
<수량 산정>

구 분		단 위	요 청		심 사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쉬트파일	쉬트파일	본	290	105,537,011	236	99,848,052	감 5,688,959
	T-4천공	m	1,136	390,703,232	109	14,757,728	감 375,945,504
H파일	일반천공	m	407	31,720,097	286	50,305,228 (T-4천공비포함)	증 18,585,131
	T-4천공		-	-	108	(22,167,864)	
버팀보		본	16	13,399,600	16	13,399,600	-
띠장		m	665	33,566,863	621	26,258,155	감 7,308,708
어스앵커		m	1,045	107,711,030	1,025	91,116,773	감 18,594,257
강재사용량		ton	274	96,230,929	232	81,248,024	감 14,982,905

<공사비 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도 급 공 사 비	830,661,358	477,894,737	감 352,766,621

○ 공사중 상수도관 이설방안 수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하천횡단 구간	 ○ 하천횡단구간 : H파일 설치후 메달기식 설치	 ○ 하천횡단구간 : open cut	
	243,663,247 원	10,593,834 원	233,069,413 원

○○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203,860	6,455,330	748,530	7.6%

■ 주요 심사내용

- 호안블럭의 연결고리가 호안블럭과 중복계상되어 삭제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호안블럭설치 (제41호표)	○ 호안블럭설치 - 연결고리 포함	○ 호안블럭설치 - 연결고리 삭제	감 59,740,560원
	9,917원/m ²	4,967원/m ²	감 4,950원/m ²

- 전석쌓기 구간 면고르기는 불필요 공종으로 삭제

구 분	단가(원)	수 량		사업비 증·감
		요 청	심 사	
면고르기(절토면)	1,745	10,648.7	2,085.8	감 14,942,260원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제방도로포장 연약지반 잡석치환 물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연 장	B=4.0m, 잡석 t=60cm	B=4.0m, 잡석 t=20cm 토사 t=40cm	
표 준 단면도			

○ 콘크리트포장(가도) 보조기층부설 제외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연 장	W=6.0m, 보조기층 t=20cm	W=6.0m, 보조기층 t=0cm	
표 준 단면도			보조 기층 삭제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급자재에 부자재 포함여부 검토
- 공사용 임시도로의 보조기층 부설 필요여부 검토

○○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폐수처리시설 설치 00톤/일, 조정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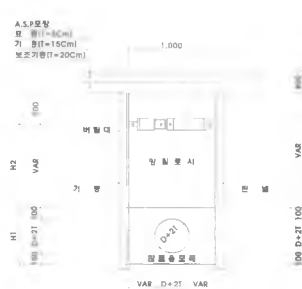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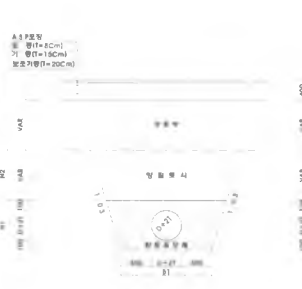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51,429	4,204,650	346,779	7.6%

■ 주요 심사내용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관거 터파기 굴착공법 조정

구분	요청	심사	증·감
관로굴착 표준단면도	 •관거터파지구간 : 조립식간이흙막이 (2m이상 터파지구간)	 •관거터파지구간 : open cut(성토부 고려 1m 굴착 후 되메우기)	감 5,836,654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경제성을 감안한 굴착공법 적용

2. 건축공사

◆ ○○○연구소 조성사업	45
◆ ○○○물류센터 건립공사	46
◆ ○○○관광단지 조성사업	47
◆ ○○○추모사당 건립사업	48
◆ ○○○전시관 리모델링공사	49
◆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50
◆ ○○○자연휴양센터 신축공사	51
◆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52
◆ ○○○복합청사 건립공사	53
◆ ○○○경로당신축 및 주변정비공사	54



○○○연구소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구소 1동(지상 1층, 연면적 563.35㎡)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60,806	791,064	69,742	8.10%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조정(0.07%→0.081%)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조사가격 적용(3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 및 창호·유리공사 2014년 건축표준품셈에 맞추어 조정
- 물량조정
 - 미장바름 높이에 따라 물량을 구분산정
 - 콘크리트파일 항타 물량조정(최종안착 항타분 반영)
 - 수장공사 물량산정 오류사항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물류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물류창고 3동(지상1층~지상 2층, 연면적 4,066.40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03,637	2,872,397	131,240	4.37%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85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 및 창호·유리공사 2014년 건축표준품셈에 맞추어 조정
- 단가산출서 조정
 -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레미콘타설을 품셈에 맞도록 조정
- 물량조정
 - 건축공사 잔토처리 물량 제외(토목공사 순성토용을 사용)
 - 문양거푸집 수량산정 오류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순성토 및 잔토처리 물량 면밀히 검토
- 건축표준품셈 및 설계기준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관광단지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물 1동(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314.83㎡)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866,354	4,382,927	483,427	9.93%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간접노무비 등 5개 항목 제비율 조정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0%→0.07%)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185건)
- 시멘트, 철근, 알루미늄창호를 관급자재로 조정
- 일위대가 조정
 - 2014년 개정된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57개 공종)
- 사토운반 기계장비를 현장에 맞도록 조정 : 15ton→24ton
- 물량조정
 - 방수공사 등 물량산정 오류부분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발주처에서는 설계서 전반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추모사당 건립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추모사당 등 5개동(지상 1층), 부지조성 및 석축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500,000	1,416,272	83,728	5.58%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산재보험료 조정(3.7%→3.8%)
 - 고용보험료 조정(0.79%→0.87%)
- 일위대가 조정
 - 토목공사와 동일한 건축공사의 터파기 등 3개 공종을 일치시킴
- 물량누락분 반영 : 관정개발
- 물품제조·구매 사항은 설계서에서 제외 : 위폐제작
- 공사성격을 감안하여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과다 적용사항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적정여부 검토
- 동일공종에 대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 공사와 관련 없는 물품제조·구매사항이 반영되지 않도록 검토

○○○전시관 리모델링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전시관 리모델링(지하1/지상 2층, 연면적 437.50m²) 전시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62,690	1,096,906	65,784	5.66%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간접노무비 조정(8.9%→8.4%), 퇴직공제부금비 반영(0%→2.3%)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0.07%→0.81%)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30건)
- 노임단가 조정
 - 2013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 2014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 일위대가 조정
 - 벽돌쌓기(0.5B, 1.0B)등 14개 공종에 대하여 2014년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
 - 전시공사 12개 공종에 대하여 2014년 건축표준품셈 적용
- 타일압착붙임 물량산정 오류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원가계산 제비율 및 시중노임단가 적용 적정여부 면밀히 검토

○○○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청소년수련관 1동(지하1/지상4층, 연면적 3,115.96㎡)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21,411	5,237,301	384,110	6.83%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113건)
- 일위대가 조정
 - 유리끼우기 등 39개 공종에 대하여 2014년 건축표준품셈으로 조정
- 팽이기초공사 및 재하시험비 제외
 - 설계자 및 구조기술사 재검토결과 팽이기초설치 불필요
-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공종(차선도색)은 품셈을 적용하여 조정
- H-PILE 길이조정(L=10.0M→L=7.0M) : 구조검토서 반영
- 잔토처리 덤프규격 및 운반거리 조정(15ton→24ton)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재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구조검토서 및 구조기술사 의견에 부합되도록 설계서 작성

○○○자연휴양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휴양센터 1개동(지상1층, 연면적 233.80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82,780	508,093	74,687	12.82%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재료비+직접노무비 5억~50억미만→5억미만)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5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쇠흙손마감)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현장여건을 감안한 물량 조정
 - 조립식가설울타리 (261M→30M)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분리발주

■ 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서 작성 시 현장여건을 반드시 감안하여 작성
- 법령에서 정한 분리발주 대상여부 면밀히 검토

○○○종합복지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종합복지관 1개동(지상5층, 연면적 2,666.24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 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70,194	3,667,091	103,103	2.73%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산재보험료 조정 : 3.7%→3.8%
 - 고용보험료 조정 : 0.79%→0.87%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조정 : 0.07%→0.08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1.81%+3,294천원→1.86%+5,349천원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67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 공종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기계 냉난방공사 물량과다 산정분 조정
- 단가산출서 조정
 - 사토운반 : 덤프트럭15TON→덤프트럭24TON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재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적정여부 검토

○○○복합청사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민센터 및 도서관(지하1/지상5층, 연면적 2,807.83m²)
어린이집(지상2층, 연면적 954.81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0일 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43,658	5,562,220	381,438	6.42%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산재보험료 조정 : 3.7%→3.8%
 - 고용보험료 조정 : 0.79%→0.87%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조정 : 0.07%→0.08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1.88%×1.2→1.97%×1.2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69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위생기구설치공사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단가산출서 조정 : 보조기층 부설 등 6개 공종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재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적정여부 검토

○○○경로당 신축 및 주변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경로당 1동(지상2층, 연면적 561.1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56,732	1,306,491	50,241	3.70%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 기타경비 조정 : 5.4%→ 5.1%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가격정보, 전문가격 조사기관 가격 적용(18건)
- 일위대가 조정
 - 미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2014년 건설표준품셈에 맞도록 조정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자재규격 조정 : 커팅타일→도기질타일
- 현장시공도 인 공중에 대하여 별도설치비 산정분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재단가 및 표준품셈 적용 시 개정된 내용 면밀히 검토
-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시 적정여부 검토
- 설계서 작성 시 현장시공도인 공종은 면밀히 검토

3. 전기공사

- ◆ ○○○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57
- ◆ ○○ 가공품의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58
- ◆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59



○○○ 자가발전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로터파기(533m), 고압용 F-CV케이블 설치(759m),
고압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0,356	490,503	99,853	16.9%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14.33% → 10.8%(조달청 기준 적용)
 - 고용보험료 : 0.87% → 0.79%(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퇴직공제부금비 : 미반영 → 2.3%(누락분 반영)
- 도시지역 할증 조정(육지에서 섬까지 왕복시간 고려)
 - 도시 할증 : 50% → 20%로 조정(○○시에서 정한 도서할증 적용)
- 현장 토질을 고려한 전선관 매설 터파기 조정
 - 보통암 473m³ → 보통암 260m³, 보통토사 185m³
- 공구손료 산출 비목 조정(노무비 → 재료비)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시공이 되도록 설계내역 검토

○○ 가공품의 제조, 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배전 및 옥외·옥내 간선 및 전열 설비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1,271	292,306	8,965	2.9%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9.1% → 9.4%(조달청 기준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3% → 2.93%×1.2(도급자 관급 포함)
- 내역서 상의 전체 공종 공구손료 조정(작업특성 고려)
 - 노무비의 3% → 2%로 조정
- 옥외 보안등주 시공 방법 변경(인력시공 → 기계화시공)
- 옥외전기공사 전선관 재료 할증 조정 : 10% → 5%
- 천정 마감구간 케이블 트레이 COVER 물량 조정
 - 비노출 구간 트레이 커버 시공 제외 : 35m → 0

■ 기타 착안사항 등

- 표준품셈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 현장 작업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경제적 시공으로 조정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배전 및 옥외·옥내 간선 및 전열 설비공사, CCTV 전원설비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93,627	570,126	23,501	3.9%

■ 주요 심사내용

- 옥외 특고압(수배전) 시공방법 변경으로 설비 수량 조정
 - 수배전 케이블 헤드(23KV, 60mm²-1C) 5개 → 3개
- 옥외특고압설비 콘크리트(보조기충재) 할증 오류 수정
 - 할증오류 : 28% → 4%(표준품셈 기준 적용)
- 실내 복도 및 로비 냉난방기 설치 제외에 따른 전원공사 물량 조정
 - 설치 제외 자재(HI-BOX) 및 인력품 (감) 조정
- 수변전설비 전선관 설치 인력품 조정(작업 특성에 맞는 공종 적용)
 - 내선설비공사(내선전공)품 → 배전설비공사(배전전공)품으로 변경
- 수배전, 분전반, 옥외보안등 등 주요 시공자재 단가 조정
 - 조달청 조사가격 및 제3자 단가, 동일규격 도내업체 생산분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시공자재에 대해 물가조사지, 가격정보, 견적가격 등을 상호 비교 합리적 단가 적용

4. 기계·통신·소방공사

◆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3
◆ ○○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공사	64
◆ ○○○ 화장시설 건립공사	65
◆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66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처리(FNR공법) 설치(60m³/D), 펌프장, 탈취설비 및 하수처리 배관공사 등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8,925	284,715	25,257	7.9%

■ 주요 심사내용

- 하수처리장 STS배관 설치(용접)품 기계실 할증 30% 적용 제외
 - 배관설치 작업공중의 난이도 등을 고려 할증 (감) 조정
- 하수처리 공법(특허)기자재 제조 원가계산서 검토를 통한 적정 원가 산정
 - 제조사가 제시한 기자재에 대해 구성 재료단가, 노무공수 산출 등 적정 제조원가 제경비 반영 검토(공법기자재 원가 검토 후 7.5% 감 조정)
- 공법기자재 제조 자재할증 물량을 내역서 수량으로 적용하여 노무비 할증 발생
 - 노무비에 반영된 자재할증 물량 제외(할증물량 재료비에만 반영)
- 플랜지접합(Ø15) 적용 인력품 조정(플랜트설비 → 일반기계설비)
 - 기계설비 품셈 : Ⅲ편 1-1-3 → Ⅱ편 1-2-1 변경

■ 기타 착안사항 등

- 특허공법 기자재에 대한 제조원가계산서 검토를 통해 적정 원가 산정

○○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계장치 및 위생배관 등 설치공사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05,584	501,114	104,470	17.2%

■ 주요 심사내용

- 표준품셈 기준에 맞게 옥외배관 재료 할증률 조정(10% → 5%)
- 작업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공구손료 적용율 조정
 - 바탕만들기, 관보온, 배관청소, 공급관 기밀시험 등 공정
- 경제적 시공을 고려한 터파기 품 조정
 - (백호80%+인력20%) → (백호90%+인력10%)
- 에너지 낭비 등을 고려 효율성이 낮은 복도, 로비 냉난방기 설치 물량 제외
- 사급 반영 자재를 관급(제3자단가계약품)으로 조정(냉난방기)
- 조달청 가격정보지,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저렴한 단가로 재조정
 - 배관자재, 보일러 등 주요자재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경제적 시공 방안 강구

○○○ 화장시설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합배선설기, TV설비, 옥외방송 및 CCTV설비공사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81,329	364,454	16,875	4.4%

■ 주요 심사내용

- 통합배선 및 TV설비공사의 '설치 및 시험조정비' 산출 건적대가를 품셈 산출대가로 변경하여 노무비 (감) 조정
- 옥외방송 및 옥외CCTV 관로굴착(터파기) 중 전기공사 옥외보안등 관로굴착과 중복구간 물량 (감) 조정
 - 관로굴착(400×600×750) : 일반 425m, 도로 60m → 일반 0, 도로 0
- 옥외 전선관 매설 공종을 구내(콘크리트 미입)배관 적용에서 옥외 지중 매설품으로 조정(통신품셈 : 3-3-1 → 3-2-3으로 변경)
- 옥외스피커 품 할증 조정(적용기준 : 노출품은 60% 적용)
 - 스피커 노출 품 100% → 60%로 조정
- 원가계산 제경비 중 '퇴직금공제부금비' 산정 대상금액(추정금액 3억원 이상)에 '관급자관급' 포함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품셈 적용 시 해설부의 제시 기준에 따라 적합한 품할증 적용

○○종합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펌프 등 설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66,821	485,580	81,241	14.3%

■ 주요 심사내용

- 작업공정을 고려한 인력품 산출 할증 조정

구분	품 명	규 격	공 종 (단위)	수 량		비 고
				당 초	조 정	
인력품 할증	전선관	후강전선관	내선전공	100%	90%	- 전기품 5-1 반복공정으로 쉬운공사
"	관내배선	HFIX 1.38 HFIX 1.78	내선전공	100%	80%	- 전기품 5-10 관내배선 바닥공사

- 2014년 개정품셈 적용

구분	품 명	규 격	공 종				비 고
			기존	변경	기존	변경	
	펌프	5.6KW 7.5KW	기계설비공		보통인부		2014년 품셈적용 (1-6-1 펌프설치)
			2.5 3.0	1.352 1.706	0.6 0.9	0.448 0.565	
"	펌프방진가대	5.6KW 7.5KW	0.46 0.46	0.83 0.891	0.53 0.53	0.265 0.284	2014년 품셈적용 (1-6-2 펌프방진가대설치)
"	옥내소화전 (노출)	1200*650*180	배관공		보통인부		
			1.35	0.816	-	0.338	
"	스프링쿨러헤드		0.19	0.092	-	0.037	2014년 품셈적용 (3-2-2 스프링쿨러설치)
"	압력공기탱크	100L	2.58	1.782	-	0.718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계설비공사 최신 개정품셈 및 경제적 시공품 적용 검토

5. 건설기술용역

◆ ○○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수밀검사	69
◆ ○○ 음식물 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1
◆ ○○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2
◆ ○○ 하수도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73
◆ ○○ 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74
◆ ○○ 상수도 관망도작성 및 누수탐사용역	75
◆ ○○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76
◆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77



○○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수밀검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관 수밀검사 198개소, CCTV 조사 6,984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1,240	86,773	44,467	33.9%

■ 주요 심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 10.5%	삭제	
산재보험료	(직노+산출경비) × 3.7%	삭제	
고용보험료	(직노+산출경비) × 0.79%	삭제	
건강보험료	(직노+산출경비) × 1.7%	삭제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2.49%	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	삭제	
환경관리비	(재+직노+산경) × 0.5%	삭제	
기타경비	(재+노) × 6.2%	삭제	
일반관리비	(재+노+경) × 6.0%	(재+노+경) × 5.0%	
이윤	(노+경+일) × 15.0%	(노+경+일) × 10.0%	

○ 하수관 수밀시험 재료비를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증감
수밀시험 시험기구	■ 재료비 1식 : 146,400원	■ 재료비 - Cylinder type : 231,000원 - Release type : 296,000원 - 급수호스 : 12,315원 - 연결호스 : 14,325원	감25,333,110원
	■ 1회/개소당 사용	■ 30회/개소당 사용	
	146,400원/개소	18,455원/개소	감 127,945원/개소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타 용역의 원가계산 제비율 검토
- 소모성 재료의 재사용 가능여부 검토

○○ 음식물 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음식물처리장 증설 00ton/일)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10,400	505,965	4,435	0.9%

■ 주요 심사내용

- 손해배상공제 가입금액을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으로 조정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은 공제가입 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착안사항 등

- 손해배상 공제 가입대상 금액 검토

〇〇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배수지 1식, 송배수관로 00km) 측량 및 토질조사 1식, 도시계획시설 결정 1식 등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89,300	944,900	244,400	20.5%

■ 주요 심사내용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을 현장에 맞게 산업플랜트 부문으로 조정(당초 건설부문 적용)
- 토질조사 시험수수료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시험수수료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반영
- 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제경비 및 기술료 기본요율 적용(당초 미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의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요율 검토
- 손해배상보험료의 부가세 반영여부 검토
- 제경비 및 기술료 반영으로 부실설계 방지

○○ 하수도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건설사업관리용역 15개월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52,000	247,518	4,482	1.8%

■ 주요 심사내용

- 현지 차량 운행비를 현장사무실에서 현장까지 거리 및 공사연장을 감안하여 유류대 적용
 - 당초 : 10ℓ/일,
 - 조정 : 3.68ℓ/일 (소요거리 24.2km × 2회, 연비 13.15km/ℓ)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지차량 운행비의 적정 유류대 반영

○○ 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종합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전입지조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79,030	672,430	6,600	0.97%

■ 주요 심사내용

- 사전입지조사의 행정계획 및 대상지역의 현황 조사 투입인력을 종합기본계획의 자료 활용 가능하여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종합기본계획 수립에 사전입지조사 등을 포함하여 시행할 경우 중복된 항목 제외 검토

○○ 상수도 관망도작성 및 누수탐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53,290	397,188	56,102	12.3%

■ 주요 심사내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공 종	단위	요 청	심 사	심사내용
관망도 보완 노선입력	인	중급 기술자 5인	중급 기술자 0.5인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망도 보완 노선입력 품의 표준품셈 적용 여부

○○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관거 정비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22,000	1,348,510	73,490	5.1%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공 종	단 위	요 청	심 사	심사내용
내역서	- 감리원수 (공중)	인·월	87.06 (단순+복잡)	81.81 (단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의거 총감리원수 산정 →현장에 맞게 단순한 공종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식	1	1	· 손해배상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반영
	- 노임단가	원	2013년 상반기	2014년 상반기	· 2014년 상반기 노임단가 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감리원수 산정 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 따른 총감리원수 산정
- 손해배상보험료의 부가가치세 반영
- 발주 시점의 노무비 반영 여부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7,691	319,253	18,438	5.46%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공 종	단 위	요 청	심 사	심사내용
산근4호	- 관련계획	식	100%	50%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존자료 활용 가능함 으로 50% 적용
산근7호	- 일반특성분석	식	100%	50%	
산근8호	- 과거재해기록분석	식	100%	50%	
산근9호	- 수문,수리현황 분석	삭	100%	50%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존 전차 용역의 자료 활용 가능 여부 검토

6. 일반용역

◆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81
◆ 양식어장 정화사업	82
◆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 용역	83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84
◆ ○○○고분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85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손상 사망 통계와 부상 발생 현황 및 군민의 안전인식 현황 조사
 - 주요 환경에 대한 안전 조사 및 웹기반 손상감시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5,500	118,832	6,668	5.3%

■ 주요 심사내용

- 인쇄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료 조정 : 중복 계상된 부가가치세 삭감
 - 인쇄비(회의자료 등 6건) : 12,075천원 ⇒ 11,012천원(△1,063천원)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사용료 : 25,000천원 ⇒ 22,730천원(△2,270천원)
- 회의비 조정 : 회의비와 정기회의비가 중복 계상되어 정기회의비 삭감
- 설문 및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조정 : 2014년 통계조사원 노임단가 참조
 - 경로당 환경조사원(1일) : 60천원 ⇒ 50천원(△10천원)
 - 어린이 안전 환경조사원(1일) : 90천원 ⇒ 50천원(△40천원)
 - 노인, 부모 인식조사원 : 80천원(1일) ⇒ 50천원(△30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설문조사요원의 인건비는 조사대상, 1일 조사량 등을 기준으로 업무 유형이 비슷한 2014년 통계조사원 노임단가를 참조하여 산정
-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

양식어장 정화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장바닥 경운(1,134ha) 2회
 - 퇴적 오폐기물 수거 및 처리 64톤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44,582	794,621	49,961	5.9%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견적조사가격 적용
 - PP로프(22mm) : 147천원 ⇒ 145천원(△2천원)
 - 앵커(60kg) : 185천원 ⇒ 183천원(△2천원)
- 간접노무비 조정 : 지급근거 없어 삭감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0.9% ⇒ 삭감
- 일반관리비 조정 : 일반용역 제비율 적용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의) 6% ⇒ 5%

■ 기타 착안사항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근거하여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용역은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무연분묘 164기 개장 및 봉안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21,360	113,284	8,076	6.6%

■ 주요 심사내용

- 제물비용 조정
 - 무연분묘 1기당 계산된 제물비용을 과업지시서상의 합동 개토제 및 위령제 제물비용으로 조정
: 3,280천원(1기당 20천원) ⇒ 600천원(300천원, 2회)(△2,680천원)
- 개장목관비 조정
 - 육탈되지 않은 유골은 일반관에 입관하고 육탈된 유골은 제작관(일명 애기관)에 입관하므로 일반관(80천원)과 제작관(40천원)의 평균가격 적용
: 13,120천원(1기당 80천원) ⇒ 9,840천원(1기당 60천원)(△3,280천원)
- 유골함비 조정 : 견적조사가격 적용
 - 4,920천원(1기당 30천원) ⇒ 3,280천원(1기당 20천원)(△1,640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장의,장묘용역업체를 대상으로 무연분묘 개장 및 봉안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검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10,740	385,135	25,605	6.23%

■ 주요 심사내용

- 직접경비 조정(시중가격 조사)
 - 항공촬영비 조정
- 견적가 적용공종을 2014년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정 조정
 - 가설사무실설치 등
- 컨테이너 운반비 제외 : 컨테이너 사무실 설치비에 포함
- 보관대 설치 및 자연과학 분석비 제외
 - 시굴조사결과 유물발견사항이 없어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항공촬영비 등 직접경비 산정 시, 시중가격 면밀히 검토
- 시굴조사결과를 고려한 발굴조사용역비용 산정 필요

○○○고분군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1식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20,193	306,190	14,003	4.37%

■ 주요 심사내용

- 현지여건에 맞도록 보정계수 조정
 - 지형(산지→평지)
 - 토질(쉬움→어려움)
 - 유물내용(15점→14~6점)
 - 유구밀도(1,000㎡당 10기 이상→1,000㎡당 5기 이상)
- 직접경비 조정(시중가격 조사)
 - 안전관리시설물 설치비
- 일반인부 4대 보험료 적용오류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지여건을 감안한 보정계수 적용 필요
- 직접경비 산정 시, 시중가격 면밀히 검토

7. 물품구매·제조 및 인쇄

◆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89
◆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90
◆ 전해수 황토 살포기 제작 설치	91
◆ 소형어선 인양기 제작 설치	92
◆ 부잔교 제작 설치	93
◆ 바다공중화장실 제작 설치	94
◆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	95
◆ 호국공원조성 조형물 제작 설치	96
◆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97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분유, 우유 등 13개 품목 구입
- 사업기간 : 2014. 2 ~ 2014. 12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대상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3,500	52,016	45,323	6,693	12.8%

※ 농·축·수산물, 배송비는 심사대상에서 제외(21,484 천원)

■ 주요 심사내용

- 각 품목별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조정
 - ○○분유(800g) : 26,500원 ⇒ 26,200원(△300원)
 - ○○우유(200ml) : 850원 ⇒ 700원(△15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같은 물품이라도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도내 여러 지역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가격 조사
 - 경상남도 계약심사 제외대상 사업(회계과-39759(2012.12.12)호)
 - 정부단가고시 물품, 농·축·수산물(식재료 포함) 구매, 소방헬기 유지 및 보수 부품, 동·식물(화환 등 포함) 구매, 행사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공사
- ※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일펜스 300m, 유흡착제 145box
- 사업기간 : 2014. 5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8,847	18,595	10,252	35.5%

■ 주요 심사내용

- 각 품목별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조정
 - 오일펜스(해수면용, m당) : 29,700원 ⇒ 25,300원(△4,400원)
 - 유흡착제(패드형, 10kg) : 137,500원 ⇒ 75,900원(△61,600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물품 규격에 맞는 다수업체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단가 산정

전해수 황토 살포기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적조 방제용 대용량 전해수 황토 살포기 1식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92,600	279,400	13,200	4.5%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견적조사가격 적용
 - 입수해수분산 구조물 가공(아세탈 540*760*100mm) : 700천원 ⇒ 600천원 (△100천원)
 - 이온수 수집 구조물 가공(아세탈 540*760*100mm) : 700천원 ⇒ 600천원 (△100천원)
 - PANEL(SUS304, 1000*1100*1600) : 2,600천원 ⇒ 2,400천원(△200천원)
 - 고출력 파워 : 17,000천원 ⇒ 16,000천원(△1,000천원)
 - controller(3.7kw) : 3,500천원 ⇒ 3,400천원(△100천원)
- 노임단가 조정 : 산업공장엔지니어링단가⇒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 단가
 - 특급기술자(1인, 1일) : 347,918원 ⇒ 247,598원(△100,320원)
 - 고급기술자(1인, 1일) : 273,921원 ⇒ 205,518원(△68,403원)
 - 중급기술자(1인, 1일) : 219,469원 ⇒ 187,789원(△31,680원)
- 원가계산 제비율조정
 - 산재보험료율 : 3.7% ⇒ 3.8%(0.1%) - 일반관리비율 : 3.0% ⇒ 6.0%(3.0%)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소형어선 인양기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형어선 인양기(10ton) 6대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677,000	602,500	74,500	11%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적용
 - 이형철근(SD300) : 748,550원 ⇒ 685,370원(△63,180원)
 - 합판거푸집(12×1.22×2.44) : 29,300원 ⇒ 25,290원(△4,010원)
- 기계·설비공사 각종 잡철물 제작 설치 품 조정 : 복잡 ⇒ 단순
 - 철공(인) : 38.71 ⇒ 27.65 - 보통인부(인) : 0.92 ⇒ 0.66
 - 용접공(인) : 3.64 ⇒ 2.60 - 특별인부(인) : 1.03 ⇒ 0.74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등

부잔교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교(L=25m, B=5m) 2기, 잔교(L=12m, B=2m) 1기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1,600	123,507	8,093	6.1%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적용
 - 아피통(판재, 각재) : 6,850원 ⇒ 6,500원(△350원)
 - 스텐리스강판(STS304, 20T) : 5,100천원 ⇒ 3,325천원(△1,775천원)
- 노무비 조정 : 2014년 하반기 건설노임단가 적용
 - 선원 : 100,991원 ⇒ 102,894원
 - 건설기계운전사 : 112,268원 ⇒ 121,654원
 - 철공 : 132,283원 ⇒ 134,827원
 - 특별인부 : 102,334원 ⇒ 106,569원
- 간접노무비 조정
 - 직접노무비의 10.8% ⇒ 직접노무비의 9.1%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기준

바다공중화장실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잔교(8.0m×10.0m) 1식 및 공중화장실 1식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70,000	68,946	1,054	1.5%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조사가격 적용
 - 발효식화장실(DW-S1) : 2,763,031원 ⇒ 2,700,000원(△63,031원)-조달가격
 - 발효식화장실(DW-S2) : 4,227,272원 ⇒ 4,136,364원(△90,908원)-조달가격
 - 계류용 앵커(200kg) : 700,000원 ⇒ 560,000원(△140,000원)
 - 계류용 로프(pp로프, 36Ø) : 604,800원 ⇒ 420,000원(△184,800원) 등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조달청 2014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보험요율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10.9% ⇒ 9.1%(△1.8%)
 -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0% ⇒ 3.8%(3.8%)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 ⇒ 0.87%0.8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의 0% ⇒ 1.85%(1.85%)
 -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의 6.2% ⇒ 5.1%(△1.1%)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기준

유용미생물 배양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유용미생물 배양기(3,000ℓ) 5기, 저장조(6,000ℓ) 3기, 미생물 멸균배양기(700ℓ) 1기, 광합성배양기(700ℓ) 2기, 단일균 미생물 저장조(700ℓ) 1기, 로타리 자동포장기 1대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503,830	479,568	24,262	4.8%

■ 주요 심사내용

- 재료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적용
 - 스텐레스 강재, 열연강판 등 18개 품목 조정
- 산재·고용보험료율 조정 : 「조달청 2014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준용
 -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7% ⇒ 3.8%(0.1%)
 -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9% ⇒ 0.87%(0.08%)
- 수량산출서 조정 : 미생물 배양기 등 잡철물 제작 설치 품 조정
 - 특수철물제작(할증률 60%, 100%) ⇒ 복잡(할증률 40%)

■ 기타 착안사항 등

- 제작 공정 및 난이도에 맞는 기계설비표준품셈 적용

호국공원조성 조형물 제작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조형탑(17m) 1식, 조형물(8m) 2식 등 제작 설치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66,905	1,418,570	48,335	3.3%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조형물 제조와 관련이 없는 환경보전비,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전액 삭감
 - 이윤 조정 : 경비에 포함된 외주가공비를 분리하여 이윤에 불산입
- 재료비 조정 :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조사가격 적용
 - 철근, 레미콘 : 조달청 가격정보 적용
 - 황동주물판, 황동볼 등 : 견적조사가격 적용
- 노무비 조정 : 2014년 하반기 건설노임단가 적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기준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중국어/한국어 혼용 30,000부, 일본어/한국어 혼용 10,000부
- 사업기간 : 2014. 10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0,000	16,179	3,821	19.1%

■ 주요 심사내용

- 용지대 : 거래실례가격 적용
 - 아트지(120g/m², 1연) : 80,000원 ⇒ 71,840원(△8,160원)
- 손지율
 - 중국어/한국어(4도양면, 13,000부 초과) : 29% ⇒ 8.2%(△20.8%)
 - 일본어/한국어(4도양면, 10,000부 까지) : 29% ⇒ 12.4%(△16.6%)
- 필름출력비 및 인쇄판비
 - 필름출력비 : 514,240원 ⇒ 128,560원(△385,680원)
 - 인쇄판비 : 48,560원 ⇒ 97,120원(48,560원)
- 번역비 : 번역업체 대상 견적가격 조사 적용
 - 번역비 : 1,000,000원 ⇒ 600,000원(△400,000원)
- 이윤 조정
 - 재료비(용지대), 외부위탁작업비(번역비)를 제외하고 이윤 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인쇄물 계약 업무매뉴얼

8. 시군자체 계약심사

◆ 창원시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01
◆ 창원시 ○○○ 숲 조성공사	102
◆ 진주시 ○○○도로 터널조명 설치공사	103
◆ 진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4
◆ 통영시 숲 탐방로 정비공사	105
◆ 통영시 재난 예·경보시설 CCTV 보강공사	106
◆ 사천시 ○○○ 주민센터 신축공사	107
◆ 사천시 임도신설사업	108
◆ 김해시 정수장간 네트워크 사업	109
◆ 김해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10
◆ 밀양시 ○○공원조성사업	111
◆ 밀양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2
◆ 거제시 ○○묘소 주변 공원화 사업	113
◆ 거제시 ○○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114
◆ 양산시 ○○○도로 설치공사	115
◆ 양산시 ○○○도로 확포장공사	116
◆ 의령군 ○○천 정비사업	117
◆ 의령군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18
◆ 함안군 ○○공사 사토장부지 농지복구 사업	119
◆ 창녕군 ○○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120
◆ 창녕군 ○○교차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121

◆ 고성군 ○○○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122
◆ 고성군 ○○○도로 확·포장공사	123
◆ 남해군 ○○ 다랑이논 정비사업	124
◆ 남해군 ○○교 재가설공사	125
◆ 하동군 ○○○○공장 저온창고 신축공사	126
◆ 하동군 ○○○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27
◆ 산청군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128
◆ 산청군 ○○택지조성 기반정비사업	129
◆ 함양군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결정용역	130
◆ 함양군 ○○~○○간 도로 확포장공사	131
◆ 합천군 ○○지구 개선사업	132
◆ 거창군 ○○○○기념 현충시설 보강사업	133
◆ 거창군 ○○○○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	134



창원시 ○○천 생태하천복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생태하천복원 L=0.82km, B=7~11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405,700	2,501,800	903,900	26.5%

■ 주요 심사내용

- 식재계획의 자재(초화류)는 나라장터 쇼핑몰 단가 적용
- 터파기, 되메우기 등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공종의 보조인부삭제
- 기층포설 및 다짐 인력식 소규모 포장을 기계시공으로 변경
- 전석, 망태석, 잡석은 현장 인근의 골재원 2개소의 견적 처리하여 운반거리 조정
- 자연석 앵커형 설치(특허)는 유사 공종인 석축쌓기 적용
- EGI웬스 설치, 해체의 웬스 상단 분진망 삭제

■ 기타 착안사항 등

- 자연하천구간 차도교 교량형식 변경(석교→콘크리트교)

창원시 ○○○ 숲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 치유센터 : 지상2층 연면적 964m²
 - ▶ 산림치유시설(산책로, 삼림욕장), 편익시설(주차장, 데크로드)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980,000	3,540,000	440,000	11.1%

■ 주요 심사내용

-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합판거푸집 3회→4회로 조정
- 터파기, 되메우기 등 기계화시공이 가능한 공종의 인력10% 삭제
- 방수공사의 도막방수 단가는 조달청 시장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경제적인 단가 적용
- 목공사의 합성목재데크깔기의 잡철물제작설치는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비내역식)품으로 변경
- 목재가공품을 부연치목(기계장비)품으로 조정

진주시 ○○○도로 터널조명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터널조명 L=248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246,659	235,580	11,079	4.49%

■ 주요 심사내용

- 터널 내 전원 인입방식 선택 시 전압강하를 과도하게 고려
 - 당초 터널 양측 입구에 제어반을 각각 설치하고 터널 중심을 기준으로 2구간으로 분리하여 벽체등(기본조명) 전원 공급
- 전압강하율 재계산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제어반 2개소를 나란히 설치하고 양측 벽면을 따라 전원선 병렬 설치
 - 케이블 물량 조정, 터파기 공정 삭제로 예산 절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에 따른 불필요한 공정 조정
- 터널 내 2회로 전원 공급으로 조명설비의 안정성 확보

진주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 = 195m, B = 10.0m
- 사업기간 : 2014년 ~ 2015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75,380	310,830	64,550	17.2%

■ 주요 심사내용

- 환정보전비 중복 계상
- 가설분진망 설치시 강관비계 매기를 가설울타리 품으로 조정
- 이동식 크러셔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를 보조기충제로 활용
- 미끄럼방지시설 중 도막식 포장을 그루방으로 저정
- 종점부(급경사 구간) 우수계획을 현장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관로 연장 조성
- 우수관(Ø500mm) L = 244m ⇒ L = 164m

■ 기타 착안사항 등

- 가격정보(조달청)와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거래실례가격(물가자료 등)비교 검토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통영시 숲 탐방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데크설치 L=95.5m, 황토길 포장 150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82,510	160,455	22,055	12.08%

■ 주요 심사내용

- 합성목재 데크 설치 및 마루널 깔기 조정
- 황토포장 견적단가 → 보도용 투수콘크리트 포장단가 조정
 - 견적단가가 견적과다 및 근거가 없어 시공방법이 유사한 보도용 투수 콘크리트 포장 품을 적용
- 조달청, 가격정보지, 시장가격조사를 통한 단가 조정(11종)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통영시 재난 예·경보시설 CCTV 보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CCTV 설치공사(7개소)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9,800	135,367	4,433	3.17%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카메라 외 3종 견적 및 가격조사분 적용
- 일위대가 및 내역서 조정

구 분	품 목(공종)	단위 (규격)	수량(내역)		비고
			당초	조정	
노무비 산출근거 돔카메라 설치 (제1호표)	통신관련 산업기사	인	0.74	0	(정통품 5-3-2)
	통신설비공	인	0.73	0.2	
노무비 산출근거 서버 설치 (제8호표)	통신설비공	인	0.09	0.24	착오적용 (정통품 3-4-9)
	S/W 시험사	인	0.39	0	
	H/W 시험사	인	0.42	0	

■ 기타 착안사항 등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실거래가격, 견적 등으로 원가 재확인
- 품셈에 의거 공량 산출 시 하단의 「해설」 부분을 상세히 해석하여 적용 여부 검토
- 인건비 공량 산출 시 적용품셈 적정여부 검토

사천시 ○○○ 주민센터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민센터 1동(지상 2층, 연면적 999.7㎡,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965,358	1,860,996	104,362	5.31

■ 주요 심사내용

- 소나무 외 23종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등을 반영 자재단가 조정
- 자재대에서 승강기는 사급⇒관급으로 적용 조정(조달청 단가 적용)
-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외벽에는 마감재가 설치되므로 합판거푸집 4회⇒6회로 원형거푸집 2회⇒3회로 적용 조정
- 표준품셈 11-1에 의거 먹매김/거푸집, 구조부는 건축목공0.018인⇒0.015인, 건축목공 0.006인⇒0.005인으로 먹매김/마무리는 건축목공 0.0255인⇒0.021인으로 적용 조정
- 철근운반에서 운반거리 40km⇒10km(사남면 적용) 적용 조정
- 소형고압블럭 포장에서 기구손료는 인건비의 3%이므로 재료비 5,624.5원⇒5,413원으로 적용 조정
- 이중적용 되어 있는 사급자재대(62,790천원) 적용 제외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 심사결과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도면 등 불일치 사항은 조정 및 재산정하여 시행

사천시 임도신설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임도개설 L=1000m(본선부 900, 접속부 100)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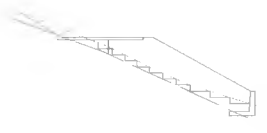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62,438	459,831	2,607	0.56%

■ 주요 심사내용

- 환율, 유류가격 가격정보지 및 조사가격 등을 반영 자재단가 조정
- 건설 노임 : 2013년 하반기 ⇒ 2014년 상반기 단가로 조정
- 모르타르 : 표준품셈 15-1-1에 의거 보통인부 1인⇒0.66인으로 적용 조정
- 뒤채움잡석 : 표준품셈 5-1-1에 의거 시간당 작업량 0.087m³/hr⇒0.07m³/hr로 적용 조정
- 철근가공조립(간단) : L형측구, L형옹벽식 측구, 다이크, 유출구날개벽에서 철근조립 인부는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
- 파형강판 : 커플링밴드는 일반밴드로 수정 적용
- NO. 43+0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횡단계획 수정 적용

구 분	요 청	심 사
L형옹벽 (H=2.0m) →위치변경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 성토 범면 적절한 안전구배(안식각) 확보 강구
- 심사결과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내역서와 수량산출서, 도면 등 불일치 사항은 조정 및 재산정하여 시행

김해시 정수장간 네트워크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송수관로(L=4.2Km, D=800m/m), 가압장(Q=52,000m³/일)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6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7,004,900	16,368,931	635,969	3.74%

■ 주요 심사내용

- 해당공종 세부과목에 따른 조정

구 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 고(적용)
내역서	토공사	Km	10.0	7.0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 최단거리 적용
	가시설 설치	m	L=2.0~2.5	L=1.5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근입장 조정
	가압펌프 설치	m/m	Ø350~400	Ø300~350	펌프용량에 적합한 배관으로 변경

- 단가 적용시 실적공사비('13년하반기→'14년상반기) 적용
- 미반영된 축중기를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토록하여 작업 효율 증가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건설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김해시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및 산책로 조성(L=1.38K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600,870	8,135,700	465,170	5.41%

■ 주요 심사내용

- 해당공종 세부과목에 따른 조정

구 분	공 종	단위	요청	심사	비 고(적용)
내역서	화강석판석포장대가	원/m ²	68,087	32,614	화강석 석재판 적정대가 적용
	목재데크 하부철물	원/ton	4,325,918	2,261,484	목재데크 하부철물대가 제작·설치 적정대가 적용
	전석불입	%	100	70	전석자재물량 공극을 적용

- 잔토처리를 위한 사토장이 지정되지 않았는바, 잔토처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계약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건설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밀양시 ○○공원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조성1식, 도시계획도로개설 L=75m, B=6.0m
- 사업기간 : 2014. 6. 11. ~ 2014. 12. 07.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0,000	384,536	15,464	3.87%

■ 주요 심사내용

- 과다 적용된 자재단가 수정(조달청 가격정보 단가 적용)
- 토공 인력(10%)+기계(90%) → 기계(100%)+보조인부 1인 적용
- 콘크리트 천공 품 조정 (착암공 2.075×1.35인 → 0.975인)
- 사토처리 운반기계 조정 (백호우 0.4m³+덤프15T → 백호우 0.7m³+덤프24T)
- 성토,절토 장비 조정 (백호우 0.4m³ → 백호우 0.7m³)
- 돌담쌓기 품 조정 (석공 0.265인 → 석공 0.04인, 보통인부 0.265 → 보통인부 0.02인)
- HI-3P 관접합 및 부설 품 조정 (수도배관공 0.04인 → 배관공 0.04인)
- 이중벽PE관(400mm)부설 기계 품 삭제(크레인 0.33시간 → 0시간)
- 원가계산 제비율 수정(간접노무비9.9% → 10.5%, 기타경비6.1%→ 6.2%)
- 공원구역내,외 접속도로 누락구간 추가 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다 적용된 자재 단가 조정
 - 일반적으로 자재단가는 물가정보, 시중가격, 견적에 의해 반영함으로 최저가의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반영하지 않고 설계하는 실정임.

밀양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마을하수도개량 L=1,334m, 배수설비 80가구
- 사업기간 : 2014. 4. ~ 2014. 1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25,140	400,650	24,490	5.76%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 사무실 (9×3×2.6) ⇒ (3,800,000원 → 2,944,000원)
 - 창고 (6×3×2.6) ⇒ (2,300,000원 → 1,932,000원)
- 토공 기계+인력 조합 품 조정(70%:30% → 90%:10%)
- 아스팔트 포장깨기 품 조정(Q=9.9m³ → Q=16.0m³)
- 콘크리트 포장깨기 품 조정(Q=0.88m³ → Q=1.75m³)
- 기존관로 철거 품 조정(수도 배관공 0.22인 → 배관공 0.21인)
- 내충격PVC관 접합부설 품 조정(수도 배관공 0.024인 → 배관공 0.013인)
- 골목길 콘크리트 포장깨기 두께 조정(T=20cm → T=15cm)
 - ※포장깨기 수량, 소운반, 포장량, 레미콘자재 등 감소

■ 기타 착안사항 등

- 관매설공 배관공에 대하여 배관공(수도) 노임단가 적용사례 빈번함.
- 하수도관로 매설 시 본선구간 포장깨기(T=20cm) 두께를 구간별 조사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 빈번함.

거제시 ○○묘소 주변 공원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묘소주변정비 A=350m², 시비조성 9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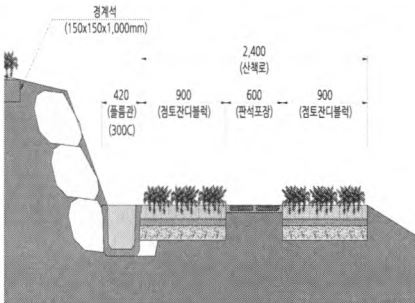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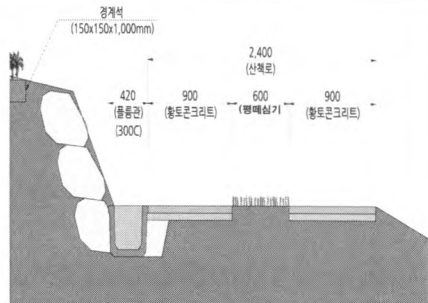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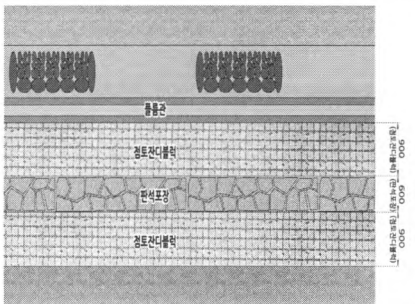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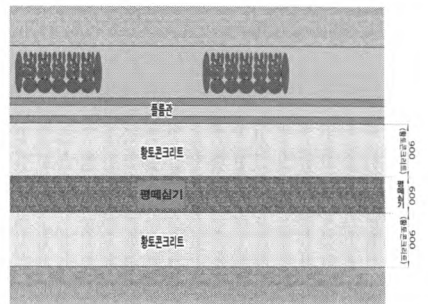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39,470	105,498	33,972	24.36%

■ 주요 심사내용

-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산책로 정비공법 선정 재검토 후 포장시공 형태 변경추진

구분	요 청	심 사
산책로 (포장공)	단면도 	
	평면도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 확인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 설치와 유용자재 검토 및 현장여건 반영으로 공사원가 절감

거제시 ○○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1식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0,000	227,400	72,600	24.20%

■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포장 단가산출시 중복된 양생인건비 삭제 및 사급으로 반영된 와이어메쉬 관급으로 변경
- 주변여건 상 주차장 구역내에 반영된 미끄럼방지포장 물량 삭제
- 배수로 전구간에 반영된 탁타일뚜껑 설치를 복개와 탁타일뚜껑 설치 혼용으로 반영

■ 기타 착안사항 등

- 발주부서와 직접 현장 확인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물인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원가 조정

양산시 ○○○도로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설치 L=4.208km B=2.0~2.4m
- 사업기간 : 2014. 3. 13. ~ 2016. 3. 1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664,500	1,451,400	210,100	12.6%

■ 주요 심사내용

- 토적표상 측점, 도면상 측점간 수량 정정.
 - 요청 : 3,015.2m³, 심사 : 3,022.2m³ 증7m³(증7천원)
- 뒤채움잡석 수량집계 오류.
 - 요청 : 3,114.1m³, 심사 : 979.7m³ 감2,134.4m³(감61,423천원)
- 천연목재 수량집계 오류
 - 요청 : 218m³, 심사 : 101m³ 감117m³(감16,965천원)
- 품셈적용 조정
 - 요청 : 잡철물제작설치, 목재난간 설치
 - 심사 : 경량형강철골조조립설치, 앵커고정식난간 감41,893천원
- 운반거리 조정
 - 요청 : L=20km, 심사 : L=10km 감26,281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과 건설표준품셈을 면밀히 검토

양산시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L=1.494km B=12.0m
- 사업기간 : 2014. 5. 15. ~ 2017. 5. 13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018,700	2,773,200	245,500	8.13%

■ 주요 심사내용

- 품셈적용 조정
 - 요청 : 콘크리트공 0.17, 보통인부 0.68
 - 심사 : 콘크리트공 0.14, 보통인부 0.16 감41,156천원
- 기계경비 효율 조정
 - 요청 : K=0.9, E=0.75
 - 심사 : K=1.1, E=0.9 감8,970천원
- 운반거리 조정
 - 요청 : 25km, 심사 : 8km 감47,673천원
- 폐기물처리비 조정
 - 심사 : 경상남도 폐기물처리단가 적용 감73,608천원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과 건설표준품셈을 면밀히 검토

의령군 ○○천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L=400.0m
(축제공 L=400.0m, BOX형교 설치 L=380.5m)
- 사업기간 : 2014. 5. ~ 2015. 5.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14,752	878,790	35,962	3.93%

■ 주요 심사내용

- 기초자재단가 조정 : 못, 각재 등
- 단가산출근거 조정(표준품셈 및 현장 여건 반영)
 - 성토부설 및 다짐에서 진동롤러 다짐 두께 조정
 - 건설기계 작업능력 최대치 적용(콘크리트깨기)
 - 호안블럭설치 단가 조정
- 수량산출서 조정
 - 호안공 호안블럭 천단콘크리트 채움 단위 수량 중복
 - 역T형옹벽 현치수량 및 전면거푸집 수량 누락
- 원가계산서 조정
 - 2014년 4월 제비율 기준 적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기타 착안사항 등

- 사토장 선정 후 사토거리 조정(정산) 필요

의령군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육공원 조성 1식(공원시설물 설치, 조경식재 등)
- 사업기간 : 2014. 3. ~ 2014. 9.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95,000	479,130	15,870	3.2%

■ 주요 심사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
 - 토목분야 ⇒ 조경분야

구 분	요 청	심 사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금	○ (재+직·노+경비)× <u>0.41</u> %	○ (재+직·노+경비)× <u>0.13</u> %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 (재+직·노+경비)× <u>0.07</u> %	○ (재+직·노+경비)× <u>0.081</u> %

- 수량산출서 조정
 - 도로경계석 중 조경구간은 미관을 고려하여 녹지경계블럭으로 대체

구 분	요 청	심 사
도로경계석 → 녹지경계블럭	○ 도로경계석 규격 : 150x150x1000 연장 : 2,111.0m	○ 도로경계석 : L=1,670.1m ○ 녹지경계블럭 : L=440.9m

- 잔디식재 수량산출 오류로 인한 수량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잔디식재	○ 잔디식재 : 10,690m ²	○ 잔디식재 : 10,690m ² → 9,785m ²

함안군 ○○공사 사토장부지 농지복구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지복구 A=147,104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046,000	980,880	65,120	6.22%

■ 주요 심사내용

- 전석쌓기(0.3m³급) 단가 조정[도계약심사단가 적용]
- 콘크리트깨기 브레이커 작업능력(Q) 조정
- 불도저 운반거리계수(e) 조정
- 골재 가격 견적가 비교 적용 및 운반비 분리 산정
- 일부 사급자재 관급자재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내 실제 시공과정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 강구

창녕군 ○○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532m, B=11.5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40,740	410,150	30,590	6.9%

■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누락분 반영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단가산출 조정

공 종	구 분	단위	당초	심사	비고
거적덮기	특별인부 보통인부	m ²	0.15인 0.23인	0.2인 0.07인	
사토	운반거리	m ³	L=10.0km	L=3.0km	
잡석운반	운반거리	m ³	L=32.8km	L=23.4km	

■ 기타 착안사항 등

- 2014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숙지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대가 조정
- 각종 물가정보지 및 조달 가격정보 최저값 적용

창녕군 ○○교차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L=267.0m, B=8.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46,000	327,000	19,000	5.5%

■ 주요 심사내용

-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른 간접노무비 조정
- 단가산출 조정

공 종	구 분	단위	당초	심사	비고
콘크리트포장깨기	대형브레이카	m ³	Q=4.6	Q=5.9	
견치블럭쌓기 (1000*600*330)	작업반장 크레인	m ²	0.01인 10ton	0 인 5ton	
보조기충구입운반	덤프 적재중량	m ³	덤프 15ton	덤프 24ton	

■ 기타 착안사항 등

- 2014년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표준품셈 숙지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파악하여 현장실정에 부합한 설계대가 조정
- 각종 물가정보지 및 조달 가격정보 최저값 적용

고성군 ○○○ 위험교량 재가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RC라멘교(2×18.9m) L=37.8m, B=6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 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76,724	869,650	7,074	0.8%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자재명	규격	단위	자재가격(원)			비고
			요 청	심 사	증감	
못	N75	kg	920	1,150	230	유통물가
웨이지핀	스틸(대)	개	61	59	△ 2	
패널	600*1200mm	매	26,900	25,500	△ 1,400	물가정보
박리제	수성(목재용)	ℓ	1,250	1,200	△ 50	유통물가

- 관급자재대 조정

자재명	규격	단위	자재가격(원)			비고 (물품식별 번호)
			요 청	심 사	증감	
교량난간	알루미늄난간 2000*750 → 2000*950	m	280,000	188,000	△ 92,000	21014934

- 교량난간 규격(높이) 및 우선구매대상인 여성기업제품으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우리도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자재 및 사급 자재는 도내업체의 생산제품(물품)을 우선구매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2013.5.13. 도지사 지시사항임.)

고성군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480m, B=6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868,790	868,560	10,230	1.18%

■ 주요 심사내용

- 기계경비기준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 고
환율, 유류대	2014.1.1.매매기준율	2014.7.1.매매기준율	

- 단가산출서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터파기(리핑) (산근 7호표)	○ 20,336원/㎡ - 인력10% + 기계90%	○ 16,758원/㎡ - 기계100%	감3,578원/㎡

- 석면폐기물처리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석면폐기물처리	○ 4,290,000원/식 - 석면운반및조사비 재경비포함	○ 3,960,000원/식 - 석면운반및조사비 재경비제외	감330,000원/㎡

- 자재단가 조정 : 컨테이너하우스 등

남해군 ○○ 다랑이는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거친돌쌓기 L=189m, H=0.4~2.9m, 농로개설 A=374m²
-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5개월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2,378	299,010	33,368	10.1%

■ 주요 심사내용

- 공구별 자재 소운반거리 평균값에서 공구별로 재산정
- 석축 기초 근입깊이 조정
- 거친돌쌓기 흑두기 단위수량 조정(50% → 35%)
- 석축 기초 근입깊이 조정에 따른 토공물량의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문화재 공사의 추진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적용
- 공사 추진 상황별 불필요 공종 및 과다한 품 적용 부분 일괄 조정

남해군 ○○교 재가설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교량재가설 L=18m, B=4.0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29,930	375,380	54,550	14.1%

■ 주요 심사내용

- 구조물터파기 품을 수중에서 육상으로 조정
- 합판거푸집 유로품으로 조정
- 목재동바리 강관동바리로 조정
- GICOM 합성라멘 제작 및 설치 공사비 경비로 조정
- 현장가설창고 컨테이너형으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 및 작업조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장여건에 부합한 설계가 되도록 방안강구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하동군 ○○○○공장 저온창고 신축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저온창고 건립 1식(A=99m²)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42,479	112,344	30,135	21.15%

■ 주요 심사내용

- 공중 누락분 반영
 - 1) 거푸집(유로폼) 설치 누락 : 464.5m²/9,221천원
 - 2) 외부사이딩강판 설치 누락 : 223m²/4,880천원
- 일위대가 조정

공 종	단위	단가산출 내용		비 고
		요 청	심 사	
샌드위치판넬 (벽체 50mm)	m ²	◦ 내장공 : 0.126인 ◦ 보통인부 : 0.062인	◦ 내장공 : 0.086인 ◦ 보통인부 : 0.022인	건설공사 표준품셈
샌드위치판넬 (지붕 50mm)	m ²	◦ 내장공 : 0.129인 ◦ 보통인부 : 0.063인 ◦ 트럭크레인 : 0.1445시간	◦ 내장공 : 0.029인 ◦ 보통인부 : 0.023인 ◦ 트럭크레인 : 0.0445시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갈바륨	m ²	◦ 철판공 : 0.53인 ◦ 용접공 : 0.48인 ◦ 보통인부 : 0.35인	◦ 내장공 : 0.086인 ◦ 보통인부 : 0.022인	건설공사 표준품셈

- 물량산출 오류 수정
 - 1) 갈바륨 : 217m² → 140m²
 - 2) 우레아폼 충전 : 415m³ → 41.45m³

■ 기타 착안사항 등

-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과다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 물량 반영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하동군 ○○○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계획수립 용역(A=621ha)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0,000	95,946	14,054	12.78%

■ 주요 심사내용

- 직접인건비 및 경비(여비) 조정
 - 1) 책임연구원수 조정 : 2인 → 1인 (1인 원칙)
 - 2) 국내여비 조정
 - 연구원수 조정 : 연구원(3인 → 4인), 연구보조원(1인 → 2인)
 - 3) 1일 인건비 단가산출 조정(퇴직급여충당금 삭제)
 -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무시 1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감액 조정함.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다적용된 수량에 대한 적정 물량 반영
- 표준품셈 및 관련 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산청군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정비 L=110m(B=7.0m(6.0m))
R.C BOX개가설 L=14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35,980	287,099	48,881	14.55%

■ 주요 심사내용

- 휘발유, 경유 단가 조정
- 아스팔트포장깨기 작업능력 조정($Q=5.9\text{m}^3/\text{hr} \rightarrow 16\text{m}^3/\text{hr}$)
- 전석쌓기 단가를 뒷길이 기준으로 조정
 - 0.3m^3 뒷길이:0.67m, 0.5m^3 뒷길이:0.79m $\Rightarrow 0.67/0.79 \approx 0.848$ (85%적용)
- 기존 구조물(박스) 철근콘크리트깨기 철근고재 누락으로 조정
 - 철근고재 : $53.25\text{m}^3 \times 50\text{kg}/\text{m}^3 \div 1,000 = 2.663\text{ton}$

■ 기타 착안사항 등

- 도 계약심사 전석쌓기(0.3m^3 급) 설계적용 개선안 적용에 따른 조정
- 건설표준 품셈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산청군 ○○택지조성 기반정비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70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29,700	875,100	54,600	5.87%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가격정보, 10종)
- 흙막기 등 토공장비 규격 조정
- 법면보호공을 줄때에서 초류종자살포+거적덮기로 조정
- 사토 운반거리 조정(L=10km→5km)
- 무근콘크리트깨기 등 8건 표준품셈에 맞게 단가 조정
- 오수관 수량 조정(L=1,255m→799m)

■ 기타 착안사항 등

- 건설표준 품셈 및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산출을 종합적으로 검토 적용

함양군 ○○정비사업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결정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결정 L=1.05km
- 사업기간 : 2014. 11. 10 ~ 2015. 02. 09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115,703	98,984	16,719	14.4%

■ 주요 심사내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5조(요율조정)에 의거 설계 난이도에 따라 요율 10% 감조정(당초 3.6% ⇒ 변경 2.99%로 조정)
- 지적도 및 토지조석 작성비가 실시설계와 군계획시설 결정분야 와 중복 적용으로 감처리

■ 기타 착안사항 등

- 과업지시서 및 현장확인 등 과업수행(실시설계) 난이도 파악
- 인쇄비 및 용지도, 토지조서 작성비 중복적용 여부 확인

함양군 ○○~○○간 도로 확포장공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확포장 L=0.94km, B=8.0m
- 사업기간 : 2014. 09. 24 ~ 2015. 09. 23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6,130	398,040	8,090	1.99%

■ 주요 심사내용

- 콘크리트 포장 깨기품 작업량 조정(4.6m³ → 5.9m³)
- 현장여건에 맞추어 사토 운반거리 조정(L=10km → L=5km)
- 비닐깔기 품조정(보통인부 0.004인 → 재료비의 5%)

■ 기타 착안사항 등

- 기존콘크리트 깨기 적용시 노후여부에 따라 단위사업량 적용
- 토공(사토, 순성토) 발생시 인근현장 파악후 운반거리 조정

합천군 ○○지구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조립식 PC BOX(2.0×1.5×1@) L=156m
콘크리트포장 12.7a, 아스팔트 표층(t=5cm) 11.78a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312,000	289,700	22,210	7.12%

■ 주요 심사내용

- 기존 콘크리트 포장, 무근구조물 깨기 물량에 대해 현장 보조기층 재활용

■ 기타 착안사항 등

- 폐기물 처리로 계획된 폐콘크리트에 대해 보조기층 재활용으로 자원 절약 및 사업예산 절감

거창군 ○○○○기념 현충시설 보강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현충시설 보강 1식(L형 옹벽 L=59m, 조경석쌓기 240톤)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1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403,132	368,220	35,110	8.7%

■ 주요 심사내용

- 토목 : 조경석 수량산출 근거 조정

구 분	요 청	심 사	비고
조경석 수량 실적율 70%적용	○ 조경석 수량 =>0.56x2.65=1.484 1.484x162.0=240Ton	○ 조경석 수량 =>0.56x2.65x70%=1.039 1.039x162.0=168Ton	감72Ton

- 건축 : 도면과 수량산출서 상이
 - 철근수량 수치조정(철근D10) 1.022톤 => 0.893톤으로 조정

■ 기타 착안사항 등

- 현장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

거창군 ○○○○ 천연잔디 유지관리용역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 1식
- 사업기간 : 2014. 3. ~ 2014. 12

■ 심사결과

(단위:천원)

심사요청액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률
91,476	80,454	11,022	12.0%

■ 주요 심사내용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적용 대상으로 원가계산시 적용 제외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이윤은 10% 일반관리비는 5% 이내로 조정
 - 이윤 : 14.98% ⇒ 9.99%, 일반관리비 : 6.0% ⇒ 5.0%

■ 기타 착안사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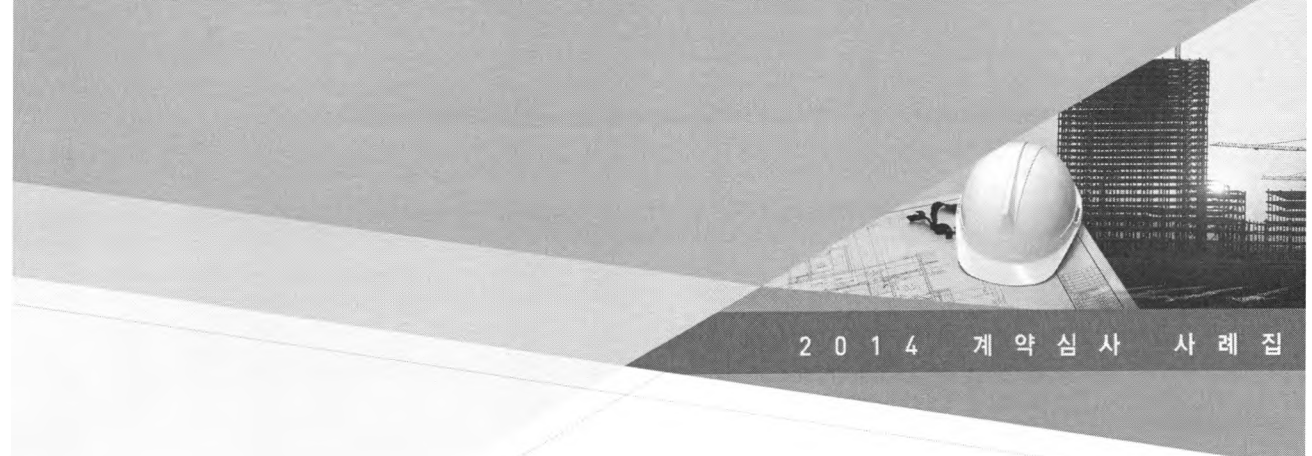
- 용역이지만 현장 업무 특수성 감안 안전관리비 반영



Ⅲ. 부 록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137
2.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155
3.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195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경상남도 규칙 제3071호
(2014. 8. 21.)]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정) 2008-09-18 규칙 제 2839호
(일부개정) 2012-10-11 규칙 제 3007호
(일부개정) 2014-08-21 규칙 제 307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도본청의 과·담당관
 -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다. 도의회사무처
 - 라. 시·군
 - 마. 도 지방공기업
 - 바. 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개정 2012.10.11>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군의 국·도비 재배정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서 의무적으로 심사하고, 그 밖의 시·군비사업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014.8.21>

-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발주되는 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신설 2012.10.1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 나.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 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 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2014.8.21>
-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개정 2012.10.11>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2.10.11>

4.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4.8.21>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사업 <개정 2012.10.11>
- 2. 삭제 <2012.10.11>
 - 가. 삭제 <2012.10.11>
 - 나. 삭제 <2012.10.11>
 - 다. 삭제 <2012.10.11>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신설 2012.10.11>
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2.10.11>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신설 2012.10.11>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신설 2012.10.11>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
<신설 2012.10.11> <개정 2014.8.21>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 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신설 2012.10.11>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0.11>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 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 사항과 보완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미산입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1>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삭제 <2012.10.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0.11>
- 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용역비 : 천원	·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 담당부서 :			
작성자	· 작성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예산자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2. 비목별 기초계산서 3.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4. 인쇄물산출 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참고자료(과업지시서, 계획서, 견적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전산파일 형태로 제출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적용단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3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익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체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격 : 절(mm × mm) 2. 수량 : 3. 면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타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기획 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 예정시에는 내역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용 지 대			
전 자 조 판 및 편 집 료			
필름출력비			
인 쇄 판 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 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o o o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4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0과-@N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체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시행품의서 등)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 출력비' 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기타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0%)			
총 계			

산출자 직급 성명 (인)

확인자 0 0 0 과장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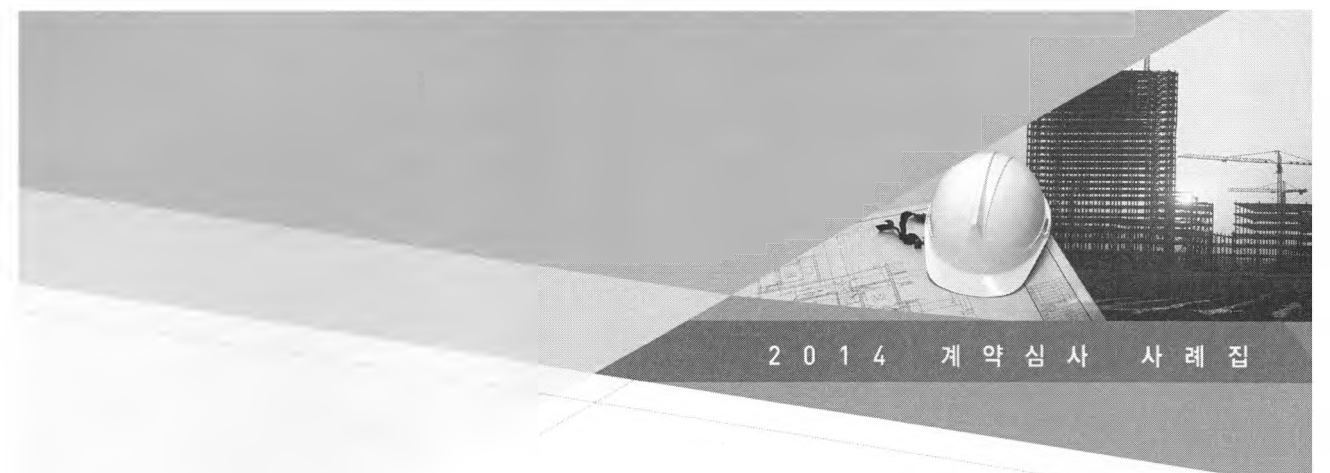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0과-@N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최초)			
공사개요			
설 계 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예산재원내역 :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 첨부 서류 1. 계약심사 요청서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2.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4.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
(2014. 8. 5.)]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 부터 “라”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 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 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

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바노무바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

하 “복수예비가격” 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 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전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공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2조 원가계산

1. 제2원가

제2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2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 기구 · 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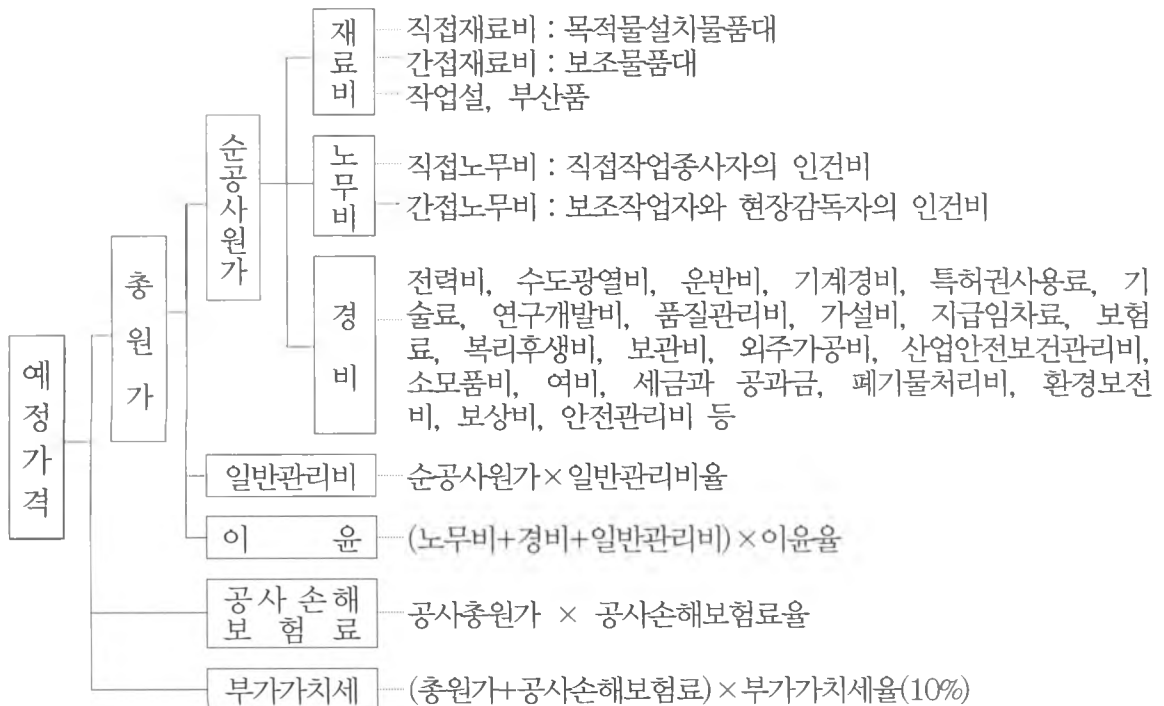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 접착제 · 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 · 기구 · 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 과 제2관 “4” 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 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

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 9" 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 하천 · 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 · 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 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 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 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에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동시행규칙 제60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

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 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

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

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

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14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018,785원
연구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47,342원
보조원	월 1,160,546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이며, 201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 (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제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분			금액	구성비	비고
비목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무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정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도 경리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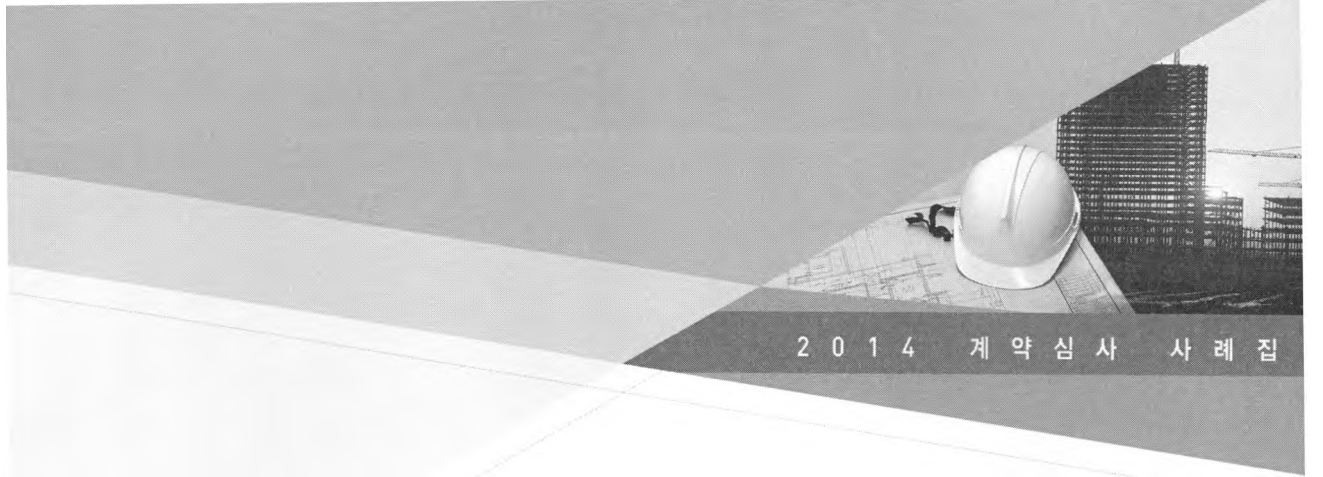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2 0 1 4 계 약 심 사 사 례 집

[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
(2014. 8. 5.)]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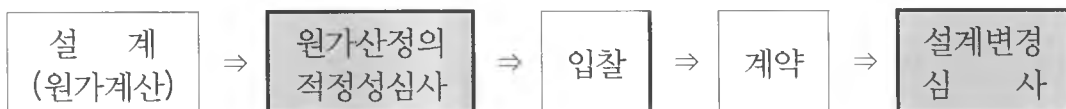
-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제4절 원가심사
- 제5절 설계변경 심사
-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전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사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사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사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사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사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사·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사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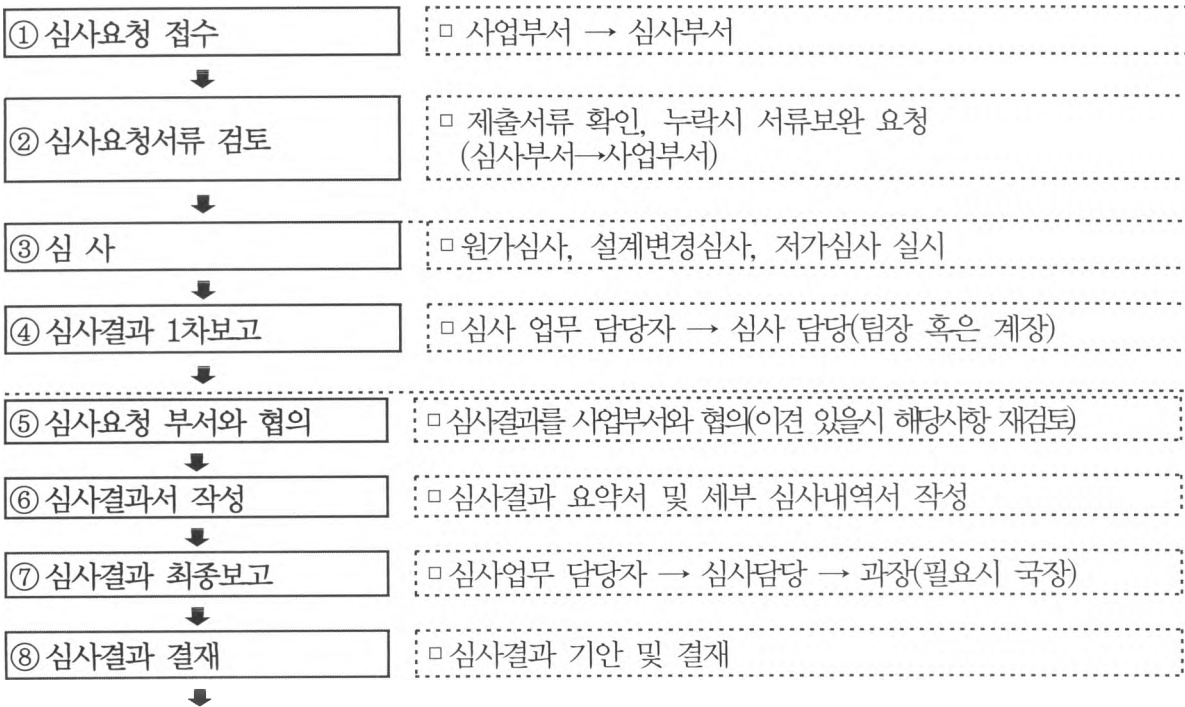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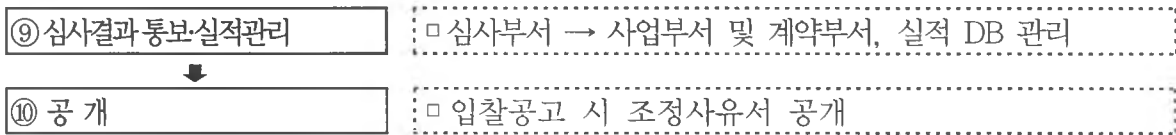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

- 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
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
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
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
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
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
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 시 게
재하여야 한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 부터 “5)” 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 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

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 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 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 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

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파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

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 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 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
 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
 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
 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
 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
 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

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사도는 20억 원(사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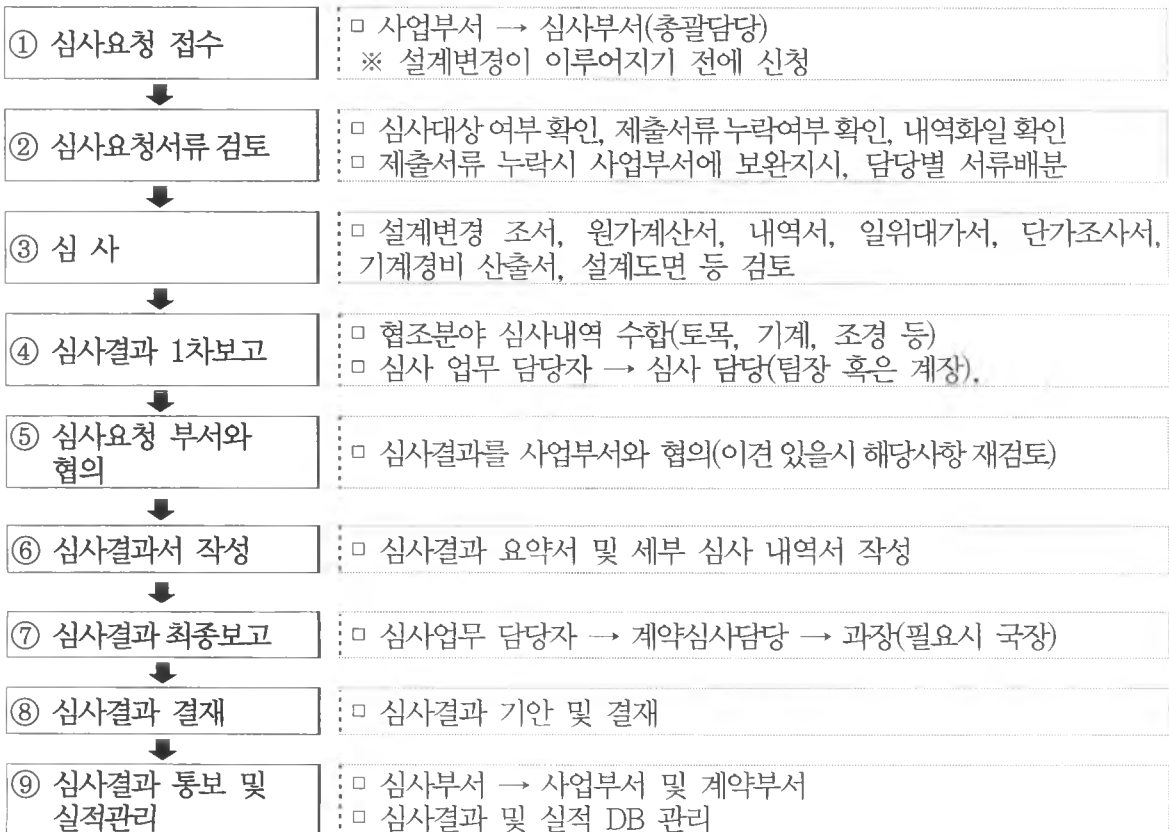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되는 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 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사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 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

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
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